^{월간} 세계 농업 뉴스

제32호 (2003년 4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목 차

١.	농업 농정 동향
	1. 일본, 도시지역 실업자의 농업부문 취업지원3
	2. 일본, 중산간직불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7
	3. 중국, 2002년도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28
	4. 중국, 이라크전쟁의 식량무역에 대한 영향 전망30
	5. 호주, 에너지용 곡물생산 지원강화
	6. 브라질, 2003년도 농산물 생산과 수출전망35
	7. EU, 신규 가맹국과 직접지불 문제 ··················41
	8. EU, 가맹국 확대와 농업문제 44
	9. 덴마크, 2002년도 돈육수출 3.4% 증가51
Η.	국제기구 논의동향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7) 55
III.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4)71
I۷.	통계자료83

농업 농정 동향

일본, 도시지역 실업자의 농업부문 취업지원 일본, 중산간직불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 중국, 2002년도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중국, 이라크전쟁의 식량무역에 대한 영향 전망 호주, 에너지용 곡물생산 지원강화 브라질, 2003년도 농산물 생산과 수출전망 EU, 신규 가맹국과 직접지불 문제 EU, 가맹국 확대와 농업문제 덴마크, 2002년도 돈육수출 3.4% 증가

일본, 도시지역 실업자의 농업부문 취업지원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공동으로 실업자가 농업생산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농림업취업프로그램'을 지난 4월 초에 결정하였 다. 이것은 도시지역의 실업자에 대해서 농업부문에서 직업과 보람을 제공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농업분야를 유지하는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적을 가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실업자에 대한 기능취득코스를 농업자대학교에 신설하고, 또 공공직업안내소에서 농업구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양성은 이를 통하여 연간 5,000명 내지 1만 2,000명이 농업법인에 취업하는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농업인력 육성대책으로도 연계해간다는 것이다.

1. 실업문제 해결과 농업인력 확보대책

최근 일본의 실업자수는 359만명(실업률 5.4%)에 달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농림어업분야에서의 구인건수는 2만 5,000명, 신규 구직자는 3만 3,000명, 그리고 취업건수는 1만 1,000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농림업분야에서의 핵심 농업노동력은 20만 3,000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간 1만 2,000명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4 세계농업뉴스 제32호 (2003. 4)

그래서 농업부문에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농업부문에서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업부문에서의 후계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며, 전업농으로 자립 가능한 신규취농(13,000-15,000명/년), 농업법인에 취 업(5,000-12,000명/년), 생활농업과 그린투어리즘 관련산업에 대한 체험기회 알선 등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2. 정보제공 및 직업소개기능 강화

우선,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4월중에 양성간의 연락협의회를 설치, 농업부문 취업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2004년부터 구체적 인 취농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현재 1일 20만건 이상 접속되고 있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구인정보서비스'(http://www.hellowork.go.jp)를 활용, 취농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성은 전국농업회의소나 도도부현에 있는 '신규취농상담센터'를 통하여 취농 희망을 취합하여 제공하고, 또 현재 전국 3개소밖에 없는 '취 농지원코너'를 47개로 늘려서 전국단계로 농업구인정보를 종합한다는 계 획이다. 농지정보도 제공한다.

농림수산성은 "지금까지 취농에 관한 정보는 지역정보에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직과 구인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면도 있었지만 향후 전국단위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게 연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습득지원 확충

취농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습득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후생노동성은 실업자에게 실시하는 '위탁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급부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2가지 제도를 연계하여 농업자대학교나 취농준비교에 트랙터 운전 등을 비롯하여 일반농업, 유기농업, 고부가가치형 농업도 배울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간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수업료 일부를 보조한다.

또, 취농지원코너에서 연수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법인 등에서 고용된 형태로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긴급지역고용창출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임업부문에 있어서 인력육성대책을 병행한다고한다.

4. 농림업체험 및 생활농업에 대한 지원

마지막으로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시민농원, 취미농업 등 '생활농업'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 직업센터 등에서의 농림업에 대한 체험정보, 취농지원코너에서의 시민농원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림업 체험시설과 시민농원 등을 증설하여 농림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시민농업에 관한 정보도 직업안내소에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 협이나 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이 생활농업 희망자와 유휴농지를 활용한 농업 등을 행하는 경우 고용대책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6 세계농업뉴스 제32호 (2003. 4)

후생노동성은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농업분야에서는 아직 잘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농업부문에서도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잘 활 용하여 고용기회 창출을 기대"한다면서 농림수산성과 적극적인 연계를 도 모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일본, 중산간직불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일본의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일본 농정사상 최초의 직불제이다. 이 제도가 중산간지역의 농업과 농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별 농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또 이러한 점들이 중산간지역 농업과 농촌의 장래 전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실시사례 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산간직불제의 실적

이 제도는 일본 농정사상 최초의 직불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도운영이 요구되어졌고, 실시단계에서 지역으로부터 불안해하는 여론이 있었던 것 도 사실이다. 농림수산성이 2000년 7월 '시정촌이 중산간직불제에 대한 기 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지방농정국을 통해 수집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대상 농지가 없거나 적다, 소구획이고 부정형 농지밖에 없다, 경작포기지의 회복전망이 없다, 지자체와 부락 내부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 농가간의 균형이 깨진다, 부락과 토지소유자중에서 신청 희망자가 없다, 재정상의 제약 때문에 실시가 어렵다, 사업으로서 경제적 효과가 적다, 부락협정의 준수가 어렵다, 특별인정기준의 미확정으로 판단을 보류했다 등이었다.

더욱이 각 지역에서 실제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 타났다.

- (1) 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자와 지역구성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 (2) 시정촌의 담당자에 따라서 이 제도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와 함께 제도의 실시의지의 차이가 매우 컸다.
- (3) 시정촌의 업무량이 많고, 제도이해, 대상농지 측량, 농가와 부락구성 원에 대한 설명 등 적은 인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정촌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 (4) 시정촌의 활동을 지원하는 농협과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역할이 확실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농가, 부락, 시정촌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간의 정보 공유, 부락협정의 체결, 기술적인 지원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1월 농림수산성은 2000년 11월 30일 현재의 실 시상황을 공표하고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였다.

"정부는 1999년도부터 직불제 보급노력을 실시하였지만, 농정사상 최초의 제도인 만큼 지자체별로 추진상황에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지방재량주의라고 평가되는 이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각 지자체의 실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도부현별로도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협정체결면적이 직불제 대상면적에 대하여 80%이상이면서 평균 1ha이상인 현1이 있는가 하면, 50%이하인 현도 있었다. 시정혼간의 추진상황에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그 같은 요인으로 시정혼장이 실시시기를 놓친 경우와 지역과제에 대응하여 부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¹⁾ 홋카이도, 이와테, 후쿠시마, 니이가타, 와카야마, 에히메, 구마모토, 오이타 등

농림수산성은 향후 협정면적 증가를 염두에 둔 지방농정국의 추진프로 그램 수립관계,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인터넷을 활용한 성공 적인 추진사례를 소개하고, 담당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 였다.

또한 몇몇 신문보도의 수치를 인용하여 작성한 2000년도 도도부현별 실시예정상황분석(2000. 9. 30)에서는 실시예정율이 80%이상의 도도부현의수치가 5개현, 80~60%가 20개현, 60%미만이 22개 현이었다. 종합적으로는 서일본지역의 실시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원인은 고령화의 진전이 지적되었다. 밭작물중심지대²의 경우에도 실시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고령화와 발작물지대의 문제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2001년 6월에는 2000년도 추진상황에 대한 확정치가 공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시 지자체수는 1,687시정촌으로 대상시정촌인 2,158시정촌의 약 8할이었으며, 협정수는 부락협정 25,621협정, 개별협정 498협정에 달하였다. 협정체결면적은 54만 1,000ha로서 2000년 7월현재 직접지불 대상면적의 약 7할 이었고, 보조금 총액은 419억엔 이었다.

협정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협정체 결면적은 홋카이도에서는 초지가 95%, 도도부현에서는 논이 70%, 밭이 약 20%를 차지했다. 전답과 초지는 급경사지의 비율이 약 70%, 보통경사지의 비율이 20~30%정도였다. 중산지역의 급경사지와 보통경사지의 비율이 4대 6인 점을 감안하면 급경사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²⁾ 도도부현중 산간지대의 논의 비율이 60%미만인 지역

다음으로 부락협정에 기초한 주요 활동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1) 농지의 유지·관리 등(경작포기지의 방지 등) : 23,855협정(80%), 임 대차설정·농작업위탁 16,899협정(66%)
- (2) 수로·농도 등의 유지·관리 : 농도의 관리 24,992협정(98%), 수로 관리 23,855협정(93%)
- (3)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는 활동 : 주변임지의 잡초제거 15,159협정 (59%), 경관작물 재배 9,852협정(38%)
- (4) 생산성·수익의 향상 : 농작업 수위탁 추진 13,518협정(53%), 기계· 시설 공동구입·이용 7,816협정(31%)
- (5) 영농인력 정착 : 전업농 육성을 위한 연수 등 참가 **8,5**03협정(33%), 인정농업자 육성 **8,149**협정(32%)

이상과 같은 2000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2001년도 추진상황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농림수산성은 2002년 1월에 2001년도의 추진상황(전망 치)을 공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를 실시중인 지자체수는 2000년도의 1,687 개 시정촌에서 2001년도에는 1,916개 시정촌으로 229개 시정촌이 증가하였다. 대상시정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8%로부터 90%로 크게 증가하였다. 부락협정의 협정수는 25,621협정에서 31,415협정으로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별협정은 489협정에서 602협정으로 21% 증가하였으며, 대상면적도 54만 1,000ha에서 63만 2,000ha로 17%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하면, 시정촌수, 부락협정수, 개 별협정수, 실시면적 모두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정착이 착실하게 진전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불제에 대한 실시농가의 평가

농림수산성은 2001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직불제에 관한 의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목적은 이 제도가 일정한 기준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 농정사상 유례 없는 제도인 관계로실시상황을 점검하여 제도의 보급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3.

먼저, 제도 참여이유(복수회답)에 대하여는 (1) '농업생산활동의 계속이가능하기 때문'은 56.1%이었고, 40세 미만층(63.2%), 100a이상층(65.0%), 홋카이도(97.3%)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즉, 젊은 층, 대규모, 홋카이도에특징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이어서 '공동활동의 부활과 증대에 의해 부락의 단결에 좋기 때문에' 는 53.3%로, 60~70세층(57.2%)과 50~100a(57.7%)층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중고 연령층, 중규모층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 (3)'부락에 영농인력의 육성·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은 20.1%였지만 40 세미만층(12.8%)으로부터 70세이상층(26.3%)까지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는 특징적인 경향을 보여, 고령자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 오키나와(80.0%)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둘째, 부락과 집단단위 추진문제에 대하여는 '고령화와 영농인력부족의 실태를 감안할 때 집단내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 다는 견해가 76.6%로 '집단보다는 개개의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³⁾ 조사대상자 3,000명, 회답자 2,708명, 연령계층별, 협정참가 면적규모별, 농업지역 유형별, 농정국별로 집계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21.2%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부탁단위 중시의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부락중시 경향이 강하였는데 오키나와 (80.0%), 中國·四國지역이 79.1%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개인중시경향은 북해도(36.5%)로 규모화에 의한 개별농업 역량에 따라 명확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대상농지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재의 대상농지기준은 대체로 타당'하다는 견해가 47.6%, '부락의 농지는 가능한범위 내에서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가 39.1%를 보였다. 전자의경우 100a이상계층(54.1%)이 높았으며, 후자의 경우는 소규모 계층이 높게나타났다. 결국 대규모층은 현행기준을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소규모층은 가능한 한 대상범위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농지의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6.7%), '대상농지를 급경사 지역 등에 한정해야 한다'(4.0%)는 견해는 극히 미미하였다.

넷째, 부락협정의 체결기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계속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5년간이라는 기간은 대체로 타당'하다는 견해가 53.7%, '제도운영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장기간(6년이상)이 바람직하다'는 35.7%, '5년간이라는 기간은 길다'라는 의견은 8.1%에 불과했다. 다만, '대체로 타당'은 70세 이상층(57.6%)과 소규모 경작계층에서 높았으며, '더욱장기간(6년이상)'을 선호한 계층은 소규모 계층에서는 적었으나 대규모 경작계층(100a이상)에서 높았다. 이는 규모에 따라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별에서는 '대체로 타당'은 도부현의 50%대, 홋카이도에서 30%대인데 비하여, '더욱 장기간'은 홋카이도에서 50%대, 도부현에서 30%대로 역전경향을 보였다(오키나와는 50%씩).

다섯째, 부락협정의 활동내용은 '현행제도의 활동내용(농업생산 활동에 다원적 기능증진활동을 추가한 것)은 대체로 타당'은 52.8%로 100a이상층 (56.9%)에서 높았고, 10a미만층(46.5%)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수로·농

도의 관리 등 공동 농업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27.4%로 이점에 대해서는 100a이상층(24.1%)이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협정의 활동 내용을 경작의 계속적인 유지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2.9%로 40세미만층(21.1%)과 10a미만층(15.2%)과 홋카이도(3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소규모 계층에서는 현행의 다양한 활동내용보다 수로·농도의 관리와 경작계속에 제도내용을 한정시켜야한다는 의향이 다른 계층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부락협정가운데 참가면적이소규모 계층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해야할 것인가가 유의해야할 점이다.

여섯째, 부락협정은 어느 범위에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부락과 동일범위'가 71.4%, '대상농지의 단지단위 등 좁은 범위'가 18.1%, '농협의 지소와 같은 광범위한 범위'가 8.6%로서 연령계층별, 협정참가규모별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락과 동일범위'는 산간농업지역(72.8%), 오키나와(90.0%)가 높게 나타났다. '넓은 범위'는 홋카이도 (18.9%)에서 높았다.

일곱째, 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농가·부락에 대한 배분비율을 각각 2분의 1씩 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49.1%, '개별 농가에 대한 배분을 많게 해야한다'가 31.3%, '부락에 대한 배분을 많이 해야 한다'는 6.0%, '보조금은 부락단위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가 3.8%였다. 2분의 1씩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5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도지침에서 대략절반정도씩 배분토록 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개별 농가에 대한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세 미만층이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규모가커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여덟째, 이 제도의 참가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복수회답), '협정체결에 있어서 시정촌과 농협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6% 로서 연령계층별, 면적규모별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홋카이도(95.9%), 오키나와(70.0%)가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다른 현의 경우는 50%수준이었다.

'시정촌과 농협 등이 중심이 된 농작업청부체제의 정비'가 38.3%였으며, 70세 이상층(4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정촌과 농협 등에 의한 협정의회계사무 등에 대한 운영지원'은 21.2%였으며, 홋카이도(36.5%)에서 특히 높았다. '홍보지 등을 활용한 추진사례, 팜플렛 등을 활용한 이 제도의 PR'이 14.3%이었다.

아홉째, 이 제도의 계속에 대하여 앞으로의 의향은 '부락전체로서 농업생산활동의 유지가 가능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향이 59.8%로 특히 60~70세층(65.0%), 100a이상층(66.2%)에서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近畿, 中國四國, 九州 등에서 60%이상이었다. '협정에 기초한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는 34.2%이었으며, '농지의유지에는 그다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2.9%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참가이유는 농업생산활동의 계속을 주목적으로 하는 젊은층과 대규모 계층, 부락의 도움을 기대하는 고령자 계층으로 구분되어진다. 부락협정의 활동내용은 농업생산활동에 다원적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소규모 계층의 경우에는 다양한활동보다는 수로·도로 관리 또는 경작계속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타 계층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 제도의 계속에 관해서는 고령자, 대규모층, 서일본지역에서 강한 희망을 나타냈다.

3. 규명되어야할 과제

농림수산성은 전국 각지의 중산간지역에서 직불제 실시이후 실태파악을 계속해왔다. 여기서 파악된 현실인식을 기초로 하여 이 제도가 시작된 이 후의 중간적인 시기에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제도의 도입상황 파악이다. 지역간 도입상황(부락협정의 체결율)에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부락협정의 체결을 규정하는 요인은 부락의 규모(농지면적, 농가수), 고령화 상황, 부락내 모임의 회수, 지역리더의 유무, 초등학교 등 지역의 주요 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미체결 요인으로서는 부락내 커뮤니케이숀 감소, 소원한 인간관계, 영농인력 부족, 토지조건 열악성, 특수한 지역조건, 인구 감소, 의욕의 부족, 복잡한 토지소유관계, 경작자와 비경작자와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으로 거론되었다. 이 같은점에 유의하면서 실태조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

둘째, 협정체결의 전제가 되는 조건차이, 지역차에 대한 검토 문제이다. 협정체결률의 차이가 토지, 작물의 특성에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검증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논밭·과수원·초지의 대비도 선명해졌다. 전답지대의 조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초지와 과수원이 많은 지역의 분석도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서일본과 동일본에서의 부락단위활동의 관련성도 검증의 대상이다. 예를 들면, 서일본에서는 의사소통의 계기로 부락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으며4, 거기에서 농업·농지의 문제에 대한 화제로 진전될 수밖에 없는 곳이 대다수이다.

한편, 동일본에서는 먼저 농업활동이 부락활동의 근본이고, 부락활동과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서일본만큼의 위기감이 적은 지역 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도 과제였다.

셋째, 부락론에서의 접근방법의 필요성이다. 부락론의 내용 중에는 몇가 지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

(1) 부락의 범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부락의 공간영역과 영농조직과 부락협정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는지, 동일하게 부락, 마을, 자치회와 영농

⁴⁾ 예컨대 협정체결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통예능의 보존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등

집단과 구성원의 차이·중복은 어떻게되고 있는지,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 부락과 旧村과의 관계는 지역에 따라 어떻게되어있는가 등이다.

- (2) 부락협정 체결농가의 경작범위 문제이다. 협정의 범위와 출입경작의 범위와 어떻게 되어있고 거기에 있어서 사람과 토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인지, 또한 자원관리의 단위는 어느 범위가 적절한 것인지,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가 등이다.
- (3) 이러한 출입경작문제와 협정체결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아이디어로서 대두되고 있는 복수 부락간의 단일협정의 성격 및 그 실태파악의 필요성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의 관리측면에서도 부락의 재편 가능성, 추진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직접지불제도의 충실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조직론적 입장에서의 접근이다. 이 방법도 세부적으로 몇 가지의 무제를 내포하고 있다.

- (1) 부락협정과 개별협정의 관련성이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부락 중심주의라는 점에서 논의가 부락협정에 집중된 가운데에서도 개별협정의 의의, 체결상황 등에 대한 실태파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나 오고 있다.
- (2) 이 제도와 시정촌 농업공사, 제3섹터 등과의 관련에 대해서이다. 이들은 부락협정과 개별협정에 어떠한 형태의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연관이 없다면 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이다.
- (3) 조직간의 협력에 대해서이다. 농업개량보급센터와 농협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실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는 시정촌과 부락구성원의 활 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해명문제이다.

다섯째, 거시적 분석의 필요성이다. 직접지불의 진척상황, 협정참가자의 의향파악과 함께 농림업센서스의 농가조사와 연계한 분석의 필요성이다. GIS를 활용한 부락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정량적인 파악에 추가하여 도도부현이 작성하고 있는 이 제도에 관련된 홈페이지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도 필요하다.

여섯째, 이 제도 및 이에 대한 연구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이다. 그에 대한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농가에 대한 공헌이다. 결국 이제도가 농가와 개별 농업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개별 농가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의의가 있으며,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문제이다. 다음으로 지역에 대한 공헌도이다. 이 제도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천사례를 착실하게 발굴하여 여타지역이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지역의 개인과 행정 등의 담당자가 전국 각지의 실천사례에 대해서 숙지하여, '이런 정도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끝으로 정책에 대한 공헌이다. 2년간의 정해진 기간의 연구이긴 하지만이 제도의 도입기에 현지에서 안고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거기에서 5년후를 전망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서구 정책과의 비교검토와 환경직불제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4.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현실과 향후 과제

일본의 중산간직불제의 특징은 '부락중점주의', '농가비선별주의', '지방 재량주의', '예산의 단년도주의로부터의 탈피'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는 것이 관계자들의 거의 공통된 인식이다. 첫째, 이 제도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상면적에 대한 실시율이라는 '量'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 제도의 도입으로 부락과 주민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부락내 여론의 핵심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라는 소위 '質'에 대한 평가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헌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거시적 종합분석 및 개별조사에서도 나온 과제는 고령화, 한계부락에서의 대응의 필요성이다. 야마구치현(山口縣), 시마네현(島根縣), 후쿠시마현(福島縣)의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호수 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있는 '한계부락'에서 특히 지역활력의 저하에 대해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부락이야말로 이 사업의 도입이 기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한계부락을 하나의 극으로 하여 중산간지역 내부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조차 도입이 되지못한 부락의 주민으로부터는 '지역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에도 동승하지못했다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 지방재량주의에 기초한 부락의 내발성을높이기 위한 방법, 지원방안 등이 이 제도와 병행하여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협정체결의 전제가 되는 조건차, 지역차 문제에 관한 시마네현의 사례에서는 논과 밭, 과수원지역의 차이, 현내의 지역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밭작물지대에서 협정체결률이 저조한 것이 지적되고 있지만 용수 에 대한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밭작물지대에서는 공익비를 활 성화시설과 생활관련시설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과수원지대에서는 논농업지대와 달리 지금까지 공동활동 실적이 낮았다.

초지의 경우는 홋카이도 낙농지대의 사례가 검토되었는데 저온을 조건 불리로 하여 보조금지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또한 농업지 대이기는 하지만 농가 인구비율이 작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주민의 이 해를 구할 수 있는 사업선택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 나가와현의 대도시근교의 중산간지역 농촌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 났으며 도시주민을 포함한 국민전체에 편익을 가져다 줄 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접지불이라는 합의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낙농이나 밭작물이 논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적고 수리에 의한 부락 결성의 필요성이 낮은 측면도 밭작물지대 농민의 높은 개별적인 자율성이 그 같은 위치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서일본과 동일본의 비교를 보면, 부락활동과 농업활동은 부 락의 형태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셋째, 부락론에서의 접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과 연구자 모두가 관심이 높았으며, 각지로부터 다양한 실태와 논의가 제기되었다. 먼저, 부락의 범위와 역할에 대해서 이다. 시마네현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직불제에 있어서는 부락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부락이라는 용어가 암묵적으로 촌락과 거의 일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부락은 본래 지표상에 있어서 주거의 집합체를 나타내고 주민의 거주지역을 나타내는 형태적인 지역단위이다. 이에 대하여 촌락은 농산어촌에 있어서 주거의 집합체이면서 동시에 촌락주민의 집합체로서 사회집단도 포함된 개념이다.

양자는 동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의 성격을 재정리하면 부락은 농산어촌주민의 집단주 거양식이라는 의미에서 형태적, 가시적 성격이 강한 표현인데 비하여, 촌락은 코뮤니티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개념적, 불가시적인 성격이 강조되고있다. 직접지불제도는 농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의 주체인 농촌주민의 공동조직에 기초한 제도이고 성격적으로는 촌락에 대하여 직접지불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대하여 직접지불제도에 있어서 부락협정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지

불의 대상을 부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청촌의 행정기관은 부락협정의 단위를 자치회와 구 등으로 표현되는 소위 부락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본래는 촌락에 대해서 지불되어야할 것이 부락에 지불되게 되고 공간적으로도 공동화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屬地的인 존재인 농지의 보전에 대하여 직접지불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屬人的인존재인 부락에 지불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적되었다.

이 점은 야마구치현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조금'의 지급단위가 '속지'인데 대하여, 활용은 '속인단위'의 부락에서 구하고 있다. '대상농지와 관련된 인적단위'와 '활용에 관련된 인적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속지'의 '속인'으로 전환 내지는 보조금 지급단위와 보조금 이용단위의 불일치를 수정하는 일종의 불랙박스가 '부락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부락협정은 단순히 경작포기 방지, 다원적 기능증진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내부시스템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코뮤니티활동과 농업활동과의 관련에 관하여 야마카타현의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직접지불 대상자집단과 자치적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이다. 일부에서는 직접지불 대상자집단이 농지관리조합이고, '共益費'는 그 집단의 의사에 의해 용도가 결정되나 조합의멤버는 자가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며 고령자도 적지 않다. 한편으로 주민의 자치적인 조직은 지역협의회이며, 사회교육과 농업생산, 도시와의 교류까지 염두에 둔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공익비'가 이 조직을 통하여 사용되어도 이상할 것은 없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대상집단과지역활성화집단과의 불일치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서 '부락'을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보조대상집단이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부락'과 중첩될 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조직과도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유의해 가면서 사례소개에서나타난 것처럼 지역별로 나름대로 대응하는 모습에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출입경작 등을 하나의 계기로서 제시하고 있다. 경작범위와 자원관리의 적정범위에 관련된 부락문제이다. 오이타현(大分縣)의 사례5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직불제는 본래는 명확한 속지시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 지연집단인 부락을 매개항으로 함으로써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속인시책과 속지시책의 불일치만이 문제라면 출입경작의 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시책의 단위를 확대하면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정범위를 확대하면 농지관리와 경작포기의 방지라는 제도 본래의 목표달성이 곤란할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넷째, 조직론적인 접근인데 개별협정과 관련된 분석은 중요성이 지적되어지면서도 가볍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와 시정촌 공사, 제3섹터와의 연관성 문제인데 니이가타현의 사례를 통하여 농업공사의 임차면적이 급증하고 중간보유농지가 증가하고 있고, 2000년부터 감소로 전환된 점등에 대하여 직불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중산간지역에 있어서 농업의 '최후의 경영체'라고 불리는 이들 조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섯째, 조직간 협력에 관한 것이다. 우선 농협과의 관련성에서 보면, 홋 카이도의 사례에서 농협이 주도하여 평등성에 대해 배려한 점이 지적되었 다. 조합원에 대한 평등한 취급을 원칙으로 하는 농협이 공동추진을 주도

⁵⁾ 入作者가 협정체결을 제기한 사례, 미체결 부락의 입작자도 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사례 등

함으로써 규모에 맞는 보조금의 지급구조로 전환하여 중소규모 경영체에 이익을 분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동시에 평등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 실현을 저해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다 자발적인 집단이 스스로 작성한 계획을 공모하고, 지역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다원적 기능 증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농협의 주도성과 농민의 자발성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협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개량보급센터이다. 야마구치현 농림부의 '부락협정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현장의 선두에선 농업개량보급원들의 고민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 가는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있다. 보급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은 후쿠시마현의 사례에서도 소개한바 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급센터의 통합과 함께 중점지도지구이외로의 파급을 위한 방법과 수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외부경영인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있다. 야마구치현의 사례에서 최조건불리지역인 '한계부락'과 같은 지역에서 리더가 없는 곳에서는 지역의 내발성을 불러일으킬 외부작용이 요구된다. 행정, 농업보급센터를 비롯하여 각 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참여에의한 지역활성화가 시급하다.

여섯째, 이 제도에 의한 사회적 공헌문제이다. 먼저 농가에의 공헌에 대해서다. 이 제도가 농가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가 이다. 야마가타현의 사례에서처럼 현 단계로는 지역주민에게 명확한 확신을 주지 못한 채애매 모호한 상태의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같은 교부금이라도 경사지의보전과 농업진흥에 더 투자하여 생활환경과 지역활동에 어떻게 사용되어가는지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홋카이도의 사례처럼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에 필요하므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그것을 지탱하는 농민, 지역주민자신의 학습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결국 농민이나 생산자를 격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추진활동의 입안, 결정에 있어서 대표자 회의와 총회에서, 협정참가자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가할 수 있다. 기계구입을 총회에서 의논한 후쿠시마현의 사례, 이제까지 농협의 이사밖에 알지 못했던 정보가조합원, 협정참가자간에 공유화된 북해도 사례 등은 교부금을 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 활용해 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점차 확산되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런 참가형의 농지보전, 농업진흥, 지역진흥의 실천은 주민의 마음속에 '수정효과'(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재발견, 미처 몰랐던 것의 발견), '연대효과'(남성 또는 호주중심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 참가하는 작업자체의 즐거움), '전망효과'(대증료법으로는 발견해낼 수 없는 장래전망을 그릴 수 있는 전망이 보여지는 과정에서의 지역과 사람들의 즐거움) 등을 살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부락협정 체결, 실천과정은협정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제도를 추진해나감에 따라 농촌주민의 잠재적 역량을 제고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지니는 인간발견, 개개인의 잠재능력발휘라는 효과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에 대한 공헌이다. 우선은 이 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농촌이 갖는 건전성을 유지, 발현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농촌의 건전성은 지역생태계의 건전성과 지역사회의 건전성, 지역경제의 건전성에 의해유지된다. 부락협정을 비롯한 이 제도의 실천은 바로 이 같은 점을 마스터 플랜(기본골격)으로 하여 행해지고 있다.

한편 이 제도는 제도시행 2년째로 접어들면서 야마가타현의 사례에 보여지듯이 점차 지역내부로 침투해 가고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나 여성에게도 더욱 침투해 가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또, 홋카이도 사례에 보여지듯이 '참가형', '지역제안형' 사업으로 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내용의 입안과 설계에 농업자가참가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일곱째, 정책에 대한 공헌문제이다. 우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평가를 받고 있다. 홋카이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보조금 활용시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서 종래의 '수비'에서 '공세'로의 도전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니이가타현의 사례에서는 농로, 수로의 관리와 휴경지 방지 등 현상유지방안(경상적경비·수비)과 함께 생산조직의 정비, 다원적 기능의 증진활동 등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안, 형식으로서 뭔 가가 남는 구상(투자적 경비·공세)을 구분하여, 전자에서 후자로 변환하 려는 시도가 소개되어 있다. 이는 향후 각지에서 강구해야 할 과제를 선도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 풀제의 검토가 각지에서 시작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니이가타현 다카야나기정(高柳町)의 3·4·3방식(개인 3할, 부락 4할, 정 3할 배분)뿐만 아니라 작업수위탁과 연수에 충당하기 위해 전체 町의 추진협의회에 부담금을 내는 방식, 사무대행비 등을 위해 전체 町의 협의회에 정해진 비율로 납입하는 방식, 町 전체에서 전액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이들은 부락간의 추진상의 불균형을 없애 부적절한 보조금이용을 줄임으로써 보조금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시도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정식도입은 지역의 실태를 고려한 진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또한 이 제도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는 사람들간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제휴, 횡적 네트워크형 사회형성의 움직임 있음에 주목해야한다. 야마구치현의 '부락협정의 아이디어', 도쿠시마현의 '부락협정방안사전', 히로시마현의 '중산간지역등 직접지불제도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인터넷을 활용한 사례소개, 의견교환은 이러한 새로운 싹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현→시정촌→부락이라는 정보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부락간의 수평적인 정보교류가 생겨나고 있음에도 주목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협정의 수립과 실천하는 과정에서 모두 함께 학습하고 '꿈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장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의 디자인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의 디자인의 일체적인 발전을 추구해 가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시작된 것은 이 제도의 특별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제도 도입으로 농촌주민이 지역, 경영, 삶 등을 다시 한번 생 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제도는 농업진흥, 농지보전, 환경보전 등의 면에서는 '고향창생사업'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투자금액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 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과의 비교검토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CTE를 '지방재량 주의'와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계 각지의 동향을 계속 파악하면서, 환경관련 직접지불도 계속 시야에 넣어두면서 일본의 중산간 지역의 장래를 고려해 갈 필요가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종합

일본의 중산간 직불제는 농업생산활동과 농지보전이라는 측면과 다원적 기능의 증진이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으로서는 농업생산 활동의 유지발전에 의한 다원적 기능의 증진이라는 측면에 역점을 두었으 며, 따라서 이 제도는 당연히 농업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그렇 지 않으면 환경보전 등의 공익성을 지니는 다원적 기능의 증진활동도 과 세대상이 되는 등 설명이 어려워진다.

동시에 직접지불 대상행위는 '농업생산 활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등'은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부락협정에서 이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농업생산활동에 의한 농지보전 등을 통한다원적 기능의 증진에 추가하여 그 자체로서의 다원적 기능의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농림수산성의 견해는 국토보전기능, 수자원함양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양호한 경관형성기능, 문화전승기능 등으로 되고 있다. 이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생산관련기능(농산물생산기능), 국토환경보전기능(자연생태계보전기능), 사회문화관련기능(지역사회유지기능, 전통문화계승기능), 국가관련기능(식료안전보장기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를 종합할 때 먼저 '수비'에서 '공세'로의 전개는 어느 선상에 위치해 야하는지가 향후 검토과제이다.

다음으로 부락협정에 있어서 공동활동의 내용, 수준향상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과세문제로부터 초점이 된 활동이지만 농가측에서도 이 같은 활동이 농업진흥, 농지·환경보전의 역할을 하고, 광의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시켜 널리 국민적 이익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자신있 게 말할 수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부락협정의 실천활동도 다음 단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조직의 지원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협정참가자는 전국에서 약 50 만인, 즉 50만호에 달하고 있다. 이 인원에 대한 학습의 사회적 의미가 매 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홍우 hwkim@maf.go.kr 02-500-1808 농림부 친환경농업과)

중국, 2002년도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와 국가통계국 농촌사회경제조사팀의 2002-03년 중국 농촌경제 정세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농촌지역이 전국 소비시장에서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분석에서는 2002년 중국 농촌경제동향에서 주요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농업산업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량품질의 전용농산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가격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농업성장률은 전년대비 2.9% 증가하여 전년 성장폭보다는 높다. 그러나 농촌경제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2년 농촌지역에서 창출한 GDP 비중은 49.2% 로서 전년대비 0.7% 포인트 하락하였다. 농촌지역의 GDP 성장기억율은 40.9%로서 전년대비 1.9% 포인트 하락하였다. 농민소득의 성장속도는 꾸준히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성 성장에 그치고 있으며, 농민들의 월급형 노동보수가 성장의 원천이 되고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2002년도 소비재 매출은 4억 위안을 돌파하여 전년대비 8.8% 성장하였다. 그 가운데 縣級 이하 지역성장은 6.8%로서 10%인 도시지역의 성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현급 이하 지역의 소비재 매출이 전체 소비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7%로서 이는 전년대비 0.7% 포인트 하락하였다.

농촌소비가 부진하고 소비시장이 활발하지 못한 근본원인은 농민소득수준이 저조하고 소득성장이 느리기 때문이다. 2002년도 도농간 주민 1인당소득비율은 전년도의 2.89:1에서 3.11:1로 벌어져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시장소비도 도시지역에 비해 성장이 부진을 계속하고 있다.

자료: 『人民日報』, 2003年 4月 9日字에서 (리 금 leekum@hanmail.net 02-521-6503 세계농정연구원)

중국, 이라크전쟁의 식량무역에 대한 영향 전망

중국 상무부는 3월 26일 이라크 전쟁이 중국의 식량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 전망에 의하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경제와 식량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화한다면 세계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식량시장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있다. 동시에 중국의 식량무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무부는 현재까지 식량시장에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모두 전쟁의 심 각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시장에서 식량무역은 미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식량무역의 동향을 분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1. 운송비용 증가로 무역질서 변화

개전후 전쟁이 단기에 종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석유가격은 일시 하락 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운송비용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수 출입상사들이 비용을 인상시키고 있다.

특히 아시아제국의 곡물수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무역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 식량수입도 일시적으로 저조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식량구매경쟁이 일어나면 영향은 심각하게 될 것이다. 미국 등 곡물수출국에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출국의 운송애로 문제로 국내 공급부족을 초래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국은 새로운 공급국을 물색하게 되면 일부 비전통 곡물수출국이 공급국 행렬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국면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전쟁은 아직까지는 중국의 식량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식량무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수입면에서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소맥과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기간 중에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미국에서 중국구까지의 해상 운송비용이 톤당 27달러로 상승하고있다. 또 태평양 서북해안에서 중국까지의 운송비용도 톤당 18달러로 상승하였다. 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개별 해운상사들은 단기간의 운송가격만 제시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동을 취하고 있다.

2. 보험비용이 증가하면 중국 소맥 증산

전쟁으로 보험비용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도 수입비용을 증가시킨다. 수입비용의 증가는 수입상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수입수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은 대두의 경우 대브라질 수입을 허가함으로써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소맥 수입상사들은 큰 영향을 받아 중국산양질 소맥으로 대체하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중국산 소맥의 품질과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3. 중국의 동남아 수출기회 확대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곡물수출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전 망이다. 아시아국가가 전쟁으로 대유럽, 대미국 곡물수입에 제약을 받게 되면 새로운 수입국을 물색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소맥과 옥수수 는 아시아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중국의 소맥이나 옥수수는 가 격이 저렴하고, 중국 정부는 수출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 운송면에서 소규모 해운을 이용하면 동남아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대만에 대한 식량무역이 낙관적이다. 대만은 2002년도에 국제시장에서 옥수수가격의 상승이나 미국 서북해안의 봉쇄 등의 후유증으로 대륙으로부터 옥수수 수입을 허가하였다. 현재 대만의 수입상사들은 전쟁의 영향으로 대미국 수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대만 수입상사들은 대만 정부로부터 대중국 옥수수 수입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대만은 옥수수, 소맥, 대두 등은 수요의 90%를 미국으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의 곡물무역이 장해를 받을 경우 대만의 미국수입에 대한의존도가 감소될 것이다.

대만 농업위원회는 이미 중동전쟁대책반을 설치, 식량과 사료곡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도 있음을 밝혀두고 있다. 농업위원회는 현재 소맥, 옥수수, 대두의 재고는 모두 2개월 반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 가격도 정상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쟁의 장기화에 의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륙으로부터의 수입개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료: http://www.drcnet.com.cn(국무원발전연구센터) 정보네트워크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호주, 에너지용 곡물생산 지원강화

호주의 곡물과 사탕 생산자들은 생물연료사업의 발전과 제품의 대체판로가 되는 에탄을 생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으로 석유공급이 단기적으로 혼란을 겪고, 화석연료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한계에 부딪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호주 산업계는 대체연료로서 생물연료생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연료로서 휘발유에 첨가할 수 있는 에탄올이 주목을 받고있다.

최근 크게 발전한 생물연료업계를 지지하기 위한 곡물, 사탕, 유지종자 등의 생산은 대부분의 호주 전원지역서 활기를 되찾게 해 줄 가능성을 안고있다. 특히, 호주 퀸즈랜드의 사탕수수농장에서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이들 농가는 그동안 값싼 외국산 사탕의 수입에 의한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수입사탕에 대한 관세로서 국내농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강력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에탄올은 석유에 부과되는 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탕 생산자는 지금까지 호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석유에 최저 10%의 에탄을 첨가를 의무화하는 법률제정을 요청해 왔다. 대체적으로 에탄올은 석유에 비해 저렴하고 부분적인 대체품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전국에탄올연합(National Ethanol Coali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에탄올이 85% 함유된 연료가 일부 주의 시장에 유통되어, 대형 자동차회사는 추가비용 없이 에탄올 함유량이 0~85%인 연료에 대응할 수 있는 연료순응형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탄올생산을 위해 옥수수재배가지역에서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고, 동시에 농장수입면에서 45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사탕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주민의 도시유출을 억제하는 한편 사탕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에서는 현재 에탄올 생산의 대부분은 뉴사우스 웨일즈 마닐드라 그룹(New-South-Wales Manildra Group)에 집중되어 있다. 이 회사는 소맥으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다. 또, 신규 회사인 오스트레일리안 바이오퓨얼즈(Australian Biofuels)에 의해 대대적인 확장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 회사는 3개의 공장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는 사탕수수의 당밀, 다른 2개는 소맥을 원료로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도 에탄올에 대한 소비세면제가 계속된다는 정부보증에 의존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에 탄올정책이 곧 확정될 것이다. 마닐드라 그룹이 여당인 자유당의 선거자금 의 거액 기부자이기도 하여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자료: http://www.maff.go.jp/kaigai/topics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브라질, 2003년도 농산물 생산과 수출전망

브라질은 최근 주요 농산물인 대두를 비롯하여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생산과 수출 양면에서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수출호조 요인은 환율의 평가절하에 의해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또 품목별로는 경쟁국의 가축질병 발생이나 생산 감소등이 브라질의 수출환경을 유리하게 한 요인도 있다.

1. 닭고기, 수출상대국 다각화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1998년 60만 8,000톤에서 2002년에는 159만 9,900톤 으로 1999년의 환율 평가절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브로일러 수출협회(ABEF)는 2003년도 브로일러 수출량이 전년에 비해 약 11% 증가한 17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량도 브라질 양계협회(UBA)와 국가배급공사(CONAB)는 금년도 생산량을 전년대비 9% 증가한 80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수출상대국은 2002년에는 일본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그 요인으로 는 일본의 수입업자가 중국에서 발생한 가금 인플루엔자에 의한 수입 감 소분을 브라질산 닭고기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EU 등지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강구할 움직임이 있지만, 브라질 관계자는 수출 대상국의 다각화(1999년 75개국, 2001년 92개국)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환율 평가절하에따른 가격경쟁력이 유지됨으로써 수출증가에 확신을 갖고 있다.

2.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 대폭 증대

2002년도 브라질 쇠고기 생산량은 705만 톤으로 미국, EU 다음의 생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 생산량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 대부분이 방목으로 사육되는 데다 대두박 등 국내에서 대량으로 식물성 사료가 조달되는 점, 그리고 연방 정부에 의해 구제역 방지를 위한 시책이 1990년대에 강구되어 온 점 등이 EU 소비자에게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 수출도 EU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도 수출은 58만 톤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82만 톤으로 급속히 신장하였다. 2002년에는 구제역으로 수출이 감소했던 아르헨티나와 우루 과이가 수출시장에서 브라질과 경합하여 수출성장률이 둔화한 반면, 브라질은 전년대비 8.5%가 증가한 89만 톤의 수출을 기록했다. 2003년에는 생산량이 2002년 대비 3.5% 증가한 73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도 7.7%가 증가할 것으로 CONAB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쇠고기만큼 생산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돼지고기 수출은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 돼지고기는 생산 사이클이 쇠고기보다 짧고, 빨리 출하할수 있어서 대형 식육업체들이 생산확대에 힘을 쏟아 왔다. 게다가 환율 평가절하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승으로 러시아 등 새로운 시장확보에 성공하였다. 수출은 새로운 시장이 된 러시아가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수출량의 약 80%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과 수출동향 및 전망

	생산	수출
2000	658만톤	58만톤
2001	682만톤	82만톤
2002	705만톤	89만톤
2003	730만톤	92만톤

주: 2002년은 추정치, 2003년은 CONAB 예상치

자료: CONAB 및 SECEX

표 2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과 수출동향 및 전망

	생산	수출
2000	192만톤	14만톤
2001	227만톤	28만톤
2002	255만톤	37만톤
2003	278만톤	42만톤

주: 2002년은 추정치, 2003년은 CONAB 예상치

자료: CONAB 및 SECEX

CONAB는 2003년도 생산동향에 대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278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산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사료용 옥수수의 국내수확량 감소에 의해 사료비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 대두, 국내 곡물생산의 절반 차지

CONAB에 따르면, 브라질의 2001/02년도 대두 수확은 4,190만 톤을 기록하여, 2000/01년도보다 9% 증가하였다. 수출도 1,6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다.

2002년도 브라질에서 대두가 증산하여 수출이 증가한 원인은 같은 해 10월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의 영향으로 환율이 일관되게 달러강세를 보인

점과 미국에서의 감산 및 세계적 수요증가 때문이다. 브라질 대통령선거에서는 좌익후보가 높은 인기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구조개혁에 대한 불안을 느낀 투자가가 달러 매수에 나선 점이 달러강세 정착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미국의 대두 감산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미국 2002년 농업법에서 대두의 융자단가(loan rate)가 인하된 반면에 옥수수 융자단가가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융자단가 변화로 대두에서 옥수수로 생산이 전환되어미국 대두는 감산하여 이것이 시장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다.

수요증가는 주로 EU와 중국이 주도하였다. EU에서 수요가 증가한 원인은 광우병(BSE)이 EU 역내에서 발생하여 식물성 사료수요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자국 내에 외국자본이 대두분쇄 플랜트를 증설하여 대두박 증산체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에는 계속 해외 수요증가와 국내 소비증가가 예상되어 브라질의 대두 생산은 4,760만 톤으로 증산,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CONAB은 대두 및 대두관련생산품의 70%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커피. 생산감소 예상되나 국제가격 회복 기대

브라질의 커피생산량은 2002/03년도에 약 4,700만 포대(1포대는 60kg)로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사상 최대의 생산량을 보였다. 내역은 아라비카종 37만 포대, 로바스타종 10만 포대이다. 수출은 중량기준으로 2002년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55만 7,000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에는 커피의 국제가격이 최근 30년간 가장 낮아 커피수출 금액은 감소하였다. 브라질 개발상공부에 의하면,

2002년도 수출액은 전년대비 1% 감소한 12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정부관계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03년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예상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생산감소에 따른 국제가격의 상승과 브라질에서의 충분한 재고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적인 생산감소가 예측되는 것은 커피나무가 해거리 현상으로 수확 량이 대폭 변동하기 때문이다. 2003/04년도 브라질과 베트남, 그리고 중미 각국의 수확량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25~30%), 현재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인 국제가격은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CONAB도 금년도 브라질 생산량 예측에 대해 해거리 현상이 있는 데다주요 산지의 기후 불순이 생산에 영향을 미쳐, 수확량은 많아야 2002년 12월 현재 3,000만 포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가격의 상승이 기대되는 한편, 브라질 국내에 충분한 수출용 커피재고가 축적되어 있어, 수확량이 감소해도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어 2003년도의수출량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 옥수수, 최근 몇 년간의 수출호조에 제동

브라질은 2000/01년도 옥수수가 대풍작(4,229만 톤)에 의해 이제까지 저조했던 수출도 증가하여(592만 톤),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에 이은 수출국이 되었다. 2001/02년도는 식부시기에 강우량이 부족하여 생산량 자체는 전년도보다 떨어졌지만(3,527만 톤), 국내소비가 감소한 점과 초기재고가 422만 톤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점도 작용하여 전년도에 이어 계속 높은 수준의 수출물량을 확보하였다.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대두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 브라질에서는 옥수수

40 세계농업뉴스 제32호 (2003. 4)

산지가 대두 식부로 전환, 옥수수 생산은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2002/03 년도는 초기 재고가 144만 톤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축사료 수요가 왕성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생산량이 증가하나 (3,705만 톤), 수출여력은 90만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자료: http://www.maff.go.jp/kaigai/topics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U, 신규 가맹국과 직접지불 문제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AP(공동농업정책)개혁 방안에는 조정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안이 채택될 경우 EU의 신규가맹국과 기존 가맹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 수급수준이 같아지는 시기는 종래 예상보다 빨라진다. 또한 이 개혁안의 우유할당량 인상조치안은 신규가맹국에도 적용을 인정 하고 있다.

EU의 신규가맹국과 기존가맹국의 직접지불의 수급수준이 어느 시점에서 같아지는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EU 집행위원회가발표한 '조정조치(modulation)'에 관한 최신 제안에는 이 문제에 미묘한 영향을 주고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CAP 개혁안에는 농가 1호당 직불 수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보상 직접지불을 누진적으로 삭감하고, 수급액이 많은 농가일수록 삭감률을 높인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가맹국이 부가지불을 상한인 30%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신규가맹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의 수급률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한편, 기존 EU 15개 가맹국은 단계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신규가맹국과 기존 15개가맹국의 수급률은 2010년에 완전히 같아지게 된다.

1. 신규가맹국에 대한 조정조치

신규가맹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 수급액이 현행 EU 수준을 밑돌고 있는 한, 이들 국가들에게 조정조치의 실시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정조치를 도입하면 신규가맹국이 수급하는 소득보상 직불의 부가지불액이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국가예산 부담이 경감되어 기존 국가에게는 이익이 된다.

소득보상 직불은 대규모 농가의 경우 2009년부터 삭감을 시작할 수 있는 데 대해, 조정조치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부가지불을 수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신규가맹국에는 조정조치자금 미지급

조정조치에 의해 절감된 자금은 일부가 농촌개발예산이 충당되고, 나머지는 낙농부문과 사탕부문의 새로운 소득보상 직불용 자금으로 유보된다. 한편 개혁안에 의하면 이 자금은 기존 15개국에만 배분되고, 신규가맹국은 자국에게 배분된 농촌개발예산 이외의 EU 자금을 얻을 수 없다. 이들 예산은 코펜하겐 EU 확대합의에 의해 2006년까지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

3. 우유할당량 인상

이번 개혁안에 따라 새롭게 EU에 가입하는 각국의 우유생산자는 정식 가맹 전이라도 우유할당량 인상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도 확인되었다. 가령 EU 집행위원회의 개혁안이 지금 내용대로 채택된다면 2004~08년에 기존 가맹국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할당량 인상조치는 신규가맹국에게도 적용되게 된다. 실제로 이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2004년 4월 1일부터이며, 신규가맹국이 정식으로 EU에 가입하게 되는 2004년 5월 1일의 한달 전이기 때문에, 이들 신규가맹국 생산자에 대한 당초 할당량은 가맹협정에서 예측한 숫자보다도 0.5%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번 CAP 개혁안은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4개 가맹국을 제외한 EU 가맹국의 우유할당량을 2004/05년도~2006/07년도의 3년간 연 0.5%씩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그 후 할당량은 전체 EU 가맹국을 대상으로 2007/08년도와 2008/09년도에 1%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4. 신규가맹국의 생산량은 7.2% 증가

이번 개혁안이 채택되는 경우 신규가맹국은 우유할당량 인상조치의 혜택을 100% 받는다. 또한 가맹후 우유 판매증가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여, 우유할당량의 가맹국 유보분 합계 67만 1,418톤이 전체 신규가맹국(키프로스와 말타를 제외)에 배분된다. 이들을 합치면 신규가맹국의 우유할당량은 가맹후 첫 5년간 7.2% 정도 증가한다는 계산이 된다.

EU 15개국의 할당량도 같은 기간 3.2% 인상되기 때문에 EU 25개국 전체 우유생산량 상한은 2003/04년도 1억 3,722만 톤에서 2008/09년도 이후 1억 4,238만 3,000톤으로 3.8%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 http://www.maff.go.jp/kaigai/topics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U, 가맹국 확대와 농업문제

2002년 12월 13일 유럽의 각 국 정상과 유럽연합(EU) 및 가입 예정인 10개 신생 가맹국(candidate country) 대표단은 2004년까지 10개 신생 회원 국을 포함하는 유럽연합 확대방안(formula for enlarging)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코펜하겐 정상회담의 결정에 따라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과 관련하여 나타날 주요 변화 등은 다음과 같다.

신생 가맹국들은 기존 EU 회원국에 적용된 조건보다 더욱 유리하고, 각국의 상황에 적절한 일괄적인 농촌개발조치(rural development package)를 시행하게 된다. 신생 가맹국 10개국들을 대상으로 한 가용 예산 총액은 2004-06년 동안 51억 유로에 달한다. 신생 가맹국을 대상으로 한 직접보조 (direct aid)는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2004년까지 EU 총 배정액(full EU rate)의 25%를 받을 것이며, 2005년에 30%, 2006년에 35%로 증액될 것이다. 이 수치는 2004년에 30-55%, 2005년에 60%, 2006년에 65%까지 증액(topped up)될 수 있다. 2006년 까지 증액된 지원금(top-up payment)은 신생 회원국의 농촌개발기금(rural development fund)에서 EU 수준의 40%까지 공동 지원될(co-financed) 수 있다. 하지만 증액지원(top-up)을 위해 사용된 EU 농촌개발기금은 20%(혹은 2004년 25%, 2005년 20%, 2006년 15%)를 초과할 수 없다. 2007년부터는 신생 회원국들이 해당연도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수준(applicable phasing-in

level) 이상인 30%까지 EU 직접지불을 계속 증액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다.

신생 회원국의 농민들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시장조치에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CAP 시장조치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수출상환(export refund)이나, 곡물, 탈지분유, 버터 등에 대한 정부개입과 같은 조치들과 관련되어 있다.

피슐러(Franz Fishler)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협상결과에 따라 신생 가맹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될 것이며, 자국의 농가를 지원하게 될 일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은 10개 신생 가맹국의 농업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공정하고,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협상이다. 신생 가맹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농업부문은 혜택을 받게 되며, 생산자와 가공업자들은 확대된 역내 시장을통하여 5억 명에 달하는 소비자를 확보하게 된다. 농민들은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CAP의 소득안정조치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욱이 농민 나아가 농촌부문은 농촌개발조치의 확대에 따라 구조조정과 현대화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1. 코펜하겐 세부 결정 사항

1.1. 신생 회원국 대상 CAP 지원 규모

정상협정은 베를린에서 각국 대표(the head of state and government)가 체결한 EU 확대(enlargement)를 위한 재정 운영방안(financial framework)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표 1 신생 가맹국별 예상 농업지출(commitments)

단위: 백만 유로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직접지불	-	1,211	1,464
유통(시장)지출	327	822	858
농촌개발	1,570	1,715	1,825
합계	1,897	3,748	4,147

주: 2004년도 EU 예산에는 어떤 직접지불도 배정되지 않음. 2004년도 직접지불은 회원 국들이 충당해야 하지만 2005년도 EU 예산에서 상환될 것임.

표 2 신생가맹국별 예상 총 직접지불

단위: 백만유로

	체코	에스 토니아	헝가리	라트 비아	리투 아니아		슬로 바키아	슬로 베니아	키프 로스	말타	계
2005	169	17	265	25	68	557	73	27	9	0.1	1,211
2006	204	22	316	31	84	675	88	33	11	0.3	1,464

주: 2004년도 EU 예산에는 어떤 직접지불도 배정되지 않음. 2004년도 직접지불은 회원 국들이 충당해야 하지만 2005년도 EU 예산에서 상환될 것임.

1.2. 농촌개발정책 변화

신생가맹국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상들은 농촌개발정책을 강화하고, 정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EU 가 맹국의 가용비용 수준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지원을 증액한다. EU 는 가입일로부터 폭넓은 농업개발조치들을 최대 80%까지 공동지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04-06년간 51억 유로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정상협정에 따르면 2004-06년간 신생가맹국의 구조조정기금으로 지출될 예산액은 3년 동안 219억 유로 정도의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2004-06년간 예상되는 특별농촌개발조치(the special rural development instrument)로 인하여 농촌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 될 것이다.

표 3 신생 가맹국별 예상 유통(시장)지출

단위: 백만유로

	체코	에스 토니아	헝가리	라트 비아	리투 아니아	포라드	1	슬로 베니아	키프 로스	말타	계
2004	45.0	13.6	63.6	8.9	23.2	135.2	16.9	14.9	4.9	0.7	327
2005	109.0	33.4	151.9	21.6	56.1	349.8	48.1	38.3	11.8	1.71	822
2006	111.0	34.4	152.0	23.6	59.2	376.5	49.2	38.8	11.5	1.7	858

표 4 신생 가맹국별 농촌개발 지출액

단위: 백만 유로

	체코	에스 토니아	헝가리	라트 비아	리투 아니아	ᆇ라ㄷ	슬로 바키아	슬로 베니아	카이 프러스	말타	계
2004	147.0	41.0	164.2	89.4	133.4	781.2	108.2	76.7	20.3	7.3	1,570
2005	161.6	44.8	179.4	97.7	145.7	853.6	118.3	83.9	22.2	8.0	1,715
2006	172.0	47.7	190.8	103.9	155.1	908.2	908.2	89.2	23.9	8.5	1,825

1.3. 농촌개발조치

농촌개발조치 대상을 다음과 같고, 추가적 농촌개발조치(농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 젊은 영농인에 대한 보조, 기술훈련, 그외 산림조치, 가공과 유통의 개선, 농촌지역 개발 및 응용)가 구조조정자금(EAGGF 보증부문)으로 부터 지원된다.

- 조기은퇴농 지원
- 조건불리지역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지원
- 환경농업 프로그램
- 농경지의 산림화
- 준생계농 대상 특별조치
- 생산자단체 결성
- 기술지원
- EU 기준에 준하는 특별보조

1.4. 준생계농 대상 특별조치

가맹국에는 '준전업농'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생산목적은 자가소비를 위함이지 시장판매가 아니다.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농가의 구조조정 기간동안 필요한 부가적 수입보전(additional income support)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대 연간 1,000 유로의특별지원이 준전업농에게 제공된다.

1.5. 직접지불의 점진적 증가

100% 직접지불을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구조를 경직시키고, 현대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EU 정상들은 10년간의 전환기 동안점진적으로 직접지불을 도입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도입초기인 2004년은 현 EU 시스템과 같은 수준인 25%에서 결정하고, 2005년 30%, 2006년 35%로 증액시킨다. 2차 단계인 2006년 이후의 직접지불은 2013년에 완료되는 CAP 원조가 적절하다고 확인된 후 다음 단계의 수준으로 증액시킨다. 이 자금은 농촌개발기금이나 정부기금(national fund)으로 전액 지원된다.

1.6. 직접지불의 증액 가능성

신생가맹국은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공동농업정책(CAP) 조치에 따라 농가에 지원된 직접보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선택사항을 이 제공받는다.

첫째, 2004년에 55%, 2005년에 60%, 2006년에 65%로 증액되는 신생 가맹국의 농촌개발기금과 정부기금의 30% 수준까지 보전 가능하다. 2007년부터 신생가맹국은 해당연도의 적정 추정치 보다 30%이상 EU의 직접지불을 계속적으로 증액(top-up) 되지만, 이 경우 자금조달은 전적으로 정부기금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표 5 직접지불의 단계적 추이. 예산지출

단위: 백만 유로

	비율(%)	금액
		1,211
2004	25	1,464
2005	30	1,743
2006	35	
2007	40	
2008	50	
2009	60	
2010	70	
2011	80	
2012	90	
2013	100	

둘째, 키프로스와 슬로베니아의 특별 규정이나 10%까지 증액되는 유사한 종류의 국가별 조치에 근거하여 가입이전 신생가맹국에서 품목별 기준 (on a product by product basis)에 따라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총 직접지불수준까지 보전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가 보전하는 모든 종류의 직접지불을 포함해서 해당 EU에 가입한 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총 직접지원은 기존 EU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직접지원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1.7. 직접지불의 이행 단일화

단일화된 체제하에서는 신생가맹국은 제한된 기간동안 총 경지이용면적에 적용된 생산중립 경지면적기준 직접지불(de-coupled area payment)의 형태로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직접보조와 경지이용면적에 근거하여, 각국의 평균 경지면적기준 직접지불이 산출될 것이다. 적절한 농업조건을 유지한 모든 형태의 농경지는 직접지불의 대상이 되며,이 방식은 선택적이고 일시적이다. 단일화된 조치는 3년간 유용하고, 1년

50 세계농업뉴스 제32호 (2003. 4)

에 두 번 개정 가능하다.

직접지불은 규제관리 통합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을 통해 관리된다. 전환기 후반에 위원회는 어떤 신생 가맹국이 단일화 체제 적용이 끝나기 전에 표준 직접지불 체제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사정할 것이다. 5년 이후 신생 가맹국이 EU 체계를 적용하기에 행정적으로 미비할 경우 단계적으로 실행될 직접지불이 동결될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일화 체계는 지속된다.

1.8. 최근 참조기간을 기준으로 한 생산할당량

위원회는 가장 최근의 과거 참조기간을 근거로 설정된 생산할당량에 동의했다. 또, 러시아 위기나 특정 기후와 같은 특수 문제들이 고려되었다. 우유 할당량은 농가소비 위주에서 판매용 우유 생산으로 바뀌는 추세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농가소비 규모에 따라 2006년도 구조조정 비축분이정해졌다. 위원회는 2006/07년 비축 할당량에 대한 방출여부를 결정했다.

	± 0 2001 00E E0 710 1E 111 ± 0 E00							
	2004 할당량(톤)	2000/1998 총생산 대비비축 비중(%)	절대비축(톤)					
카프로스	145,200	0	(6,000)					
체코	2,682,143	2	55,787					
에스토니아	624,483	3	21,885					
헝가리	1,947,280	2	42,780					
라트비아	695,395	3.5	33,253					
리투아니아	1,646,939	3	57,900					
말타	48,698	-	(3,000)					
폴란드	8,964,017	3.5	416,126					
슬로바키아	1,013,316	2.5	27,472					
슬로베니아	560,424	2.5	16,214					
계	18,327,897		671,417(680,417)					

표 6 2004-06년 신생 가맹국별 우유 고정 할당량

주: 키프로스와 말타의 절대 비축량은 2004년도 추가 할당량임.

자료: EU, MEMO/02/301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덴마크, 2002년도 돈육수출 3.4% 증가

덴마크 돈육협회(DS)에 의하면 2002년도 덴마크의 돈육수출량(생체, 가 공품 포함)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163만 1,000톤에 달하였다. 덴마크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EU 제4위의 돈육 생산국이며, 생산량의 80%이상을 수출하는 돈육수출대국이다.

2002년도 덴마크의 주요 수출국은 수출량의 63%를 차지하는 EU 역내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103만톤이었다. 주요 수출국은 독일, 영국, 이탈리 아 등이며,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것은 돈육이나 비육용 자돈의 유력한 공급국인 네덜란드의 수출량이 감소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다. 네덜 란드에서는 양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돼지 사육두수의 감 축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수출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표 1 덴마크의 돈육수출량

단위: 천톤, %

	2001	2002	증감률
EU 역내	995	1,030	3.5
독일	329	342	3.9
영국	307	312	1.5
이탈리아	139	143	2.7
EU 역외	583	601	3.1
일본	231	243	5.6
러시아	107	104	▲ 2.7
미국	52	54	3.2
합계	1,578	1,631	3.4

또, EU 역외도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60만 1,000톤에 달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다. 2002년 8월 일본의 돈육특별세이프가 드 발동에도 불구하고 대일 수출은 5.6%나 늘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 수출은 값싼 브라질산에 시장을 잠식당해 2.7%나 감소하였다.

한편, 2003년도 덴마크의 돈육 수출량은 전년에 비해 1% 감소할 것으로 EU 통계국(Eurostat)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DS는 전년수준으로 생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시장이 적은 덴마크는 생산동향이 직접 수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03년도 수출량도 2002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역외 주요 수출국의 동향을 보면, 일본에서는 돈육특별세이프가드가 3월에 해제되었다.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4월부터 돈육에 대한 관세할당제도가 시작되었다. 연간 40만 5,000톤(2003년은 적용기간을 고려하면 33만 7,500톤)의 할당량이 설정되었으며, 이것은 2002년도 러시아의 수입실적의 7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EU의 식육관련단체는 이번 관세할당제도의 도입과 저가의 브라질산 돈육과의 경합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 시장에서 EU산 돈육의 점유율은 저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수출도 이러한 영향을 완전히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위, 품질, 규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는 잉여 돈육은 다른 나라로의 수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http://lin.lin.go.jp/alic/week/2003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국제기구 논의동향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7)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7)

2002년 3월부터 시작한 농업모델리티 협상은 지난 3월 31일까지 1년간 계속되었지만 결국 결렬로 끝이 났다. 이로 인해 2005년 1월 1일자로 일괄 타결하기로 약속한 DDA 전체협상 일정에도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가맹국들은 향후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

하빈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지난 2월 12일 모델리티 1차 초안, 그리고 3월 18일 1차 초안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수 치목표를 둘러싸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격렬한 논의가 있었으나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도 못한 체 모델리티 협상의 1막은 내렸다.

하빈슨 제안에 대해서는 수출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세와 수출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을 요구하는 미국 등 수출국과 농업이 가지는 비교역적 기능을 중시하는 NTC 그룹을 비롯한 수입국간에 특히 이해가 대립되는 등수출입을 둘러싼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배경에는 미국, EU, 일본등 각국의 국내농업이 안고있는 특수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빈슨 제안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려웠던 배경으로서 미국, EU, 일본 등이 안고있는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향후 모델리티협상 행 방에 대하여 전망해 본다.

1. 미국의 국내보조문제

1.1. 하빈슨 제안에 대한 입장

지난 1년간 모델리티협상에서는 수출국(미국, 케언즈 그룹), 수입국(또는 NTC 그룹), 개도국 그룹 등 3자간의 이해가 대립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하 빈슨 의장의 1차 초안에서 개도국에 대해 우대조치를 제시한 결과로 지난 2월, 3월 협상에서는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미국의 농민단체는 미국 정부의 제안이 보다 자유무역지향적이나 하빈슨 제안은 보호무역색채가 강하여 미국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것이 공 식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각 단체의 주장을 엄밀하게 보면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미국농업연합회(AFBF)의 입장

우선 하빈슨 초안이 발표된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미국농업 연합회(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FBF)는 지난 3월 초에 죌릭 무 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농업협상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하빈슨 1차 초안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을 요청할 것"을 요구 하였다.

AFBF의 스톨만 회장은 서한에서 "1차 초안은 협상의 기초안은 될 수 있으나, 회원국간의 불공정을 시정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수정안 제안시에는 대폭적인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역왜곡효과가 있는 국내보조는 EU·일본의 불공정성, 특히 EU는 미국의 3배나 되는 지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관세 감축에 대해서도 스위스방식이 채택되지 않았고, 개도국의 시장개방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출보조금의 최종적 철폐는 지지할 수 있지만, 최종 철폐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며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AFBF는 2월 26일자로 다른 8개 단체(미국면화수출연합, 유지종자 협회, 곡물협의회, 식육연합 등)와 연명으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및 농업 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 가운데 하빈슨 1차 초안이 미국의 수출신 용에 규율을 가하려 한 점에 불만을 표명하고, 현행 제도의 유지를 요청하 였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의도는 국내보조와 수출신용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2) 전국옥수수생산자협회(NCGA)

전국옥수수생산자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NCGA)는 3월 초 죌릭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 자유화, 즉 관세와 수출보조금 감축은 미국과 세계 농업경제의 개선에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하빈슨 1차 초안이 아니라 원래의 미국 정부제안으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1차 초안에 있는 수출보조금 철폐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나, 철폐 기간이 너무 긴 것을 비난 했다. 관세 감축은 여전히 가맹국간 균형이 결여되어 있고, 스위스방식과 같은 관세조화(Harmonization)만이 미국의 옥수수 생산자가 공정한 시장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역왜곡적이 아닌 현재의 국내보조 수준을 제한하는 어떠한 변화 또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감축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만약 이미 2002년 농업법에 의해 옥수수생산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국내보 조 수준을 감축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표명하 였다.

(3) 농민단체의 모순

수출보조의 형태는 수출시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출보조금에서부터 수출용 농산물에 대한 국내 보조, 그리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구입대금을 보증하는 수출신용까지 다양 하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수출보조에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 출보조금은 보조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는 국가에 비해 유리한 효과를 가 진다는 점이다.

AFBF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출보조 중에서 주로 EU가 채택하는 수출보조금제도에 대해서는 조기 철폐를 요청하면서도 자국이 실시하고 있는 수출신용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와 공정을 표방하는 AFBF의 이기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NCGA는 WTO 농업협상에서 철폐나 감축 대상은 EU형 수출보조 금과 다른 나라의 관세이며, 미국은 어떠한 의무도 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내보조 감축에 대해서도 2002년 농업법에 의해 획득한 보조금은 1 달러도 감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점이 모순된 일면이다.

1.2. 미국의 국내보조문제

미국은 2002년 5월에 2002년부터 향후 6년간 적용되는 '2002년 농업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 미국 정부는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가격지지를 강화하고 있다. 즉, 융자단가 인상을 비롯하여가격보전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 여기에 고정직접지불등을 추가하여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보전하고, 또 마케팅론과 융자부족불(LDP) 등의 국내보조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등 국내보조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가격지지 대상을 곡물뿐만 아니라 낙농제품, 낙화생 등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국내보조를 확충하면서도 UR협정과는 전혀 이질적인 모델리티 제안서를 2002년 7월에 WTO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을 하빈슨 제안, EU 제안 등과 비교해 보면 몇가지 모순점이 있다.

우선 UR 농업협정에 의하면 국내보조 중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대해 미국, EU, 일본에 인정된 AMS 상한(2000년 약속수준)은 각각 190억 달러, 660억 달러, 360억 달러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55%를 감축하는 EU 제안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최종년도의 AMS는 미국 86억 달러, EU 239억달러, 일본 162억 달러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하빈슨 제안을 적용하면 AMS는 미국 76억 달러, EU 212억 달러, 일본 144억 달러가 된다. 여기에 국내 생산액의 2.5%에 상당하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가 각각 50억 달러, 50억 달러, 23억 달러이므로이를 합치면 미국 126억 달러, EU 262억 달러, 일본 167억 달러이다.

표 1 미국·EU·일본의 AMS 감축수준 시산

단위: 억달러

		미국	EU	일본
국내생	산액	2,000	2,000	910
AMS(7	기준년도)	240	660	450
AMS(2	AMS(2000년 약속)		530	360
AMS(1	998년 실적)	104	419	69
	하빈슨 초안	126	262	167
AMS 감축수준	AMS 각축수주 EU 제안		239	162
	미국 제안	200	200	91

주: 국내보조 감축에 대해서는 ①하빈슨 초안은 AMS 60% 감축, 최소허용보조 2.5%로 감소, ②EU 제안은 AMS 55% 감소, 최소허용보조 철폐, ③미국 제안은 농업생산액의 5%, 최소허용보조는 5%로 유지하는 안임.

그런데 미국 제안을 적용하면 미국은 200억 달러, EU는 200억 달러, 일본은 91억 달러가 된다. 현재 미국의 2002년 농업법에 의한 예산이 10년간약 1,800억 달러, 1년 평균 180억 달러로 예상된다. 또 미국은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등을 비롯한 최소허용보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 미국 제안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가 없게 된다. 즉 미국 생산자는 해외시장개방으로 얻는 것은 있어도, 잃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미국의 농민단체가 미국 제안을 적극 지지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하빈슨 제안에서는 EU 제안을 일정 부분 배려하여 최소허용보조(de-minimis)를 반감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국내보조 상한은 126달러로억제된다. 더구나 미국의 가격지지프로그램은 이미 2002년 농업법으로 확정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감축대상정책(amber box)을 허용대상정책(green box)이나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 등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미국은 최소허용보조를 2.5% 수준으로 감축하게 되면 국내보조의제약요인으로 2002년 농업법에서 도입한 가격지지프로그램을 유지할 수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하빈슨 제안을 수용할 수 없었던점이다.

2. EU의 수출보조문제

2.1. 하빈슨 제안에 대한 입장

휘슬러 EU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하빈슨 의장이 이제까지 모델리티안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만 3월 18일 제출한 수정안은 1차 초안과 비교하면 내용의 변화가거의 없다. 그 결과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균형을 잃고,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특정 농산물 수출국에 유리한 내용이다. 또 비교역적 관심사항

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WTO 가맹국간 타협점을 찾아내는 데에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역내 농업개혁에 매진해 온 EU와 같은 선진국에게는 균형을 잃고,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를 시행해 온 국가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이다. 수출경쟁을 위한 조치로서 수출신용 등 수많은 불합리한 점과 의문스러운 식량원조가 남아 있다. 그리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반영과 평화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래서는 WTO 가맹국간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EU는 WTO 가맹국 75개국이 하빈슨 의장에 의한 관세의 대폭적이고 급진적 감축방식이 아니라 품목별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UR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WTO 가맹국 145개국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커다란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즉, EU는 하빈슨 제안이 농산물 수출국을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하면서, 농촌지역개발, 식량안보, 식품안전 등 이른바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명하였다. 또한 개도국에 대해 추가적인 개발지원을 배려하도록 요구하였다.

2.2. EU의 수출보조문제

EU는 1992년 CAP 개혁이후 1999년 '아젠다 2000'으로 개혁을 단행하였고, 2007년 이후를 겨냥하여 2002년에는 '중간보고(mid-term review)'를 발표하여 추가적인 농정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UR 이후 뉴라운드에 의한 시장개방 대비, 동유럽의 EU 가맹, 품목별 수급불균형의 확대 가능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등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과 농촌개발 등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표 2 EU의 수출보조금 실적. 1995~2000년

단위: 백만EURO

	_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산물	7,802	5,703	5,863	4,842	5,601	5,646
곡물	1,903	313	532	429	883	824
사탕	1,312	1,230	1,116	1,265	1,591	1,439
유제품	2,267	1,605	1,753	1,427	1,439	1,671
쇠고기	1,761	1,559	1,499	774	545	661

자료: EU집행위원회(EC)

주: 1993년 12월에 결정된 UR 협정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1995-2000년간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 이상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EU는 역내시장에 개입, 시장 안정화 도모를 중시하고 있다. 주요 곡물에 대해 역내 시장가격이 개입가격을 하회하면 매입을 실시한다. EU는 정해진 품질 기준에 합치하는 한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한다. 그리고 매입한 농산물에 대해 EU는 국제시장에서 수출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가격에 비해 높은 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수출보조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결과로 EU의 경우 가격지지를 위한 지출과 가격지지를 인하하는 대 신에 도입한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 등에 의한 국내보조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수출보조는 과대하게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6-10년 이후 수출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는 하빈슨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생산제한 직접지불의 50% 감축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2004년부터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점을 고려하면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3. 일본의 쌀 관세감축문제

3.1. 하빈슨 제안에 대한 입장

일본 정부는 하빈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이 작성한 모델리 티 1차안에 대해 농림수산성 장관 명의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즉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도국 배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나 종래 전혀 불충분하였던 수출규제, 수출세 분야의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다.

먼저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UR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예외없이 관세격차를 압축하는 조화원칙이 강하게 적용된 나머지, 비무역적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각국간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또 "MMA 확대, 선진국의 일정 기간후 SSG 폐지, AMS 감축에 품목별 요소 도입,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의 감축의무, 허용대상 보조정책(green box)의 요건강화, 다양한 형태의 수출보조금간의 규율 불균등 등의 면에서 많은 국가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에서 하빈슨 초안은 전체적으로는 "감축 수치가 대단히 높고, 지나치게 야심적이며, 일부는 수출국의 주장에 편중된 내용이다. 도하각료선언의 맨데이트에 따른 현실적인 모델리티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 '계속성', '균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총체적으로 수용하기어려운 내용"이라며, 수용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일본 농협중앙회(JA全中)는 농업모델리티를 '유연한 감축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NTC 그룹을 포함한 75개국의 지지를 얻고 있음에 불구하고 30여개 국의 지지에 불과한 '대폭 감축'을 제안한 하빈슨 의장은 결렬의 책임을 져야하고, 향후 협상에서는 의장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2. 일본의 쌀 관세감축문제

일본이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쌀 문제가 있다. DDA 농업협상에서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쌀 수입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차단하여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일본은 1999년 4월에 쌀을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1kg당 351엔이라는 고액 관세상당치를 설정한 결과로 그동안 쌀 수입은 완전 차단되었다. 관세화를 단행한 당시 일본은 가격요소만 고려하는 경우 20년간 완전한 수입차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가격(엔/60kg, 현미)
	현재	미국산 중국산	26,340 25,740
수입가격	관세 45% 감축	미국산 중국산	17,133 16,533
	관세 60% 감축	미국산 중국산	14,064 13,464
국내도매가격	평균 (최저) (최고)		15,923 (13,490) (26,015)

표 3 하빈슨 제안에 의한 관세감축 결과

주: (1) 수입가격은 'CIF+관세'이며, SBS 입찰결과(2002.12.20) 기준임.

⁽²⁾ 국내도매가격은 자주유통미 입찰결과(2002.12.20)임.

즉 관세화 당시 일본은 국내산과 경합할 수 있는 관세수준을 160엔으로 시산하였다. 관세 351엔(1999년)이 160엔 수준으로 인하되는데 소요기간은 20년 정도(2018년, 161엔/kg)로 보고서 이기간 동안 쌀산업 구조개혁을 단행하다는 의도이었다.

그러나, 하빈슨 제안대로 관세율 90%이상 품목의 경우 5년간 최저 45% 감축한 결과, 관세가 2011년에 수입저지수준인 160엔을 하회하는 157엔으로 하락, 따라서 가격요소만 고려하는 경우 DDA 이행기간인 5년간 (2006-2010년) 수입차단효과가 있고, 그 이후는 외국산 쌀이 수입된다는 결과이다. 즉 하빈슨 제안에 의한 수입차단기간은 UR 협정에서 기대한 20년 간(1999-2018년)보다 15년간이나 단축되는 급격한 관세감축이며, 이로 인해 일본 농업은 붕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하빈슨 제안을 수용할 수없는 배경이다.

4. 향후 일정과 전망

4.1. 하빈슨 방식의 한계

농업모델리티 협상은 이상과 같은 각국의 복잡한 국내 사정을 반영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결렬로 끝났다. 협상기간이 1년이라는 비교 적 단기간이라는 점도 원인이 되겠지만 하빈슨 의장의 교섭방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하빈슨 제안은 지나치게 상세한 나머지 협상의 자유도를 없애버렸다"고 하였다. 하빈슨 제안으로는 미국이 향후 유망 시장으로 노리고 있던 개도국의 개방정도가 미국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동시에 미국 정부로서는 2002년 농업법에 의하여 실시하 고 있는 프로그램도 중도에서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되었던 것이다. 한편, 수입국에 있어서는 농업 붕괴가 예상되는 제안이었다. 특히 수출 보조금 폐지나 관세의 대폭 감축 등은 EU의 공통농업정책(CAP)의 유지와 일본의 쌀농업 장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는 한 각국 제안의 '중간지점'을 찾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 던 하빈슨 방식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는 동시에 '농업개혁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는 국가들'과 '자신은 노 력하지 않으면서 시장확대의 혜택을 누리기만 해 온 국가들'의 주장에 대 하여 경중을 고려하여 접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협상타결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4.2. 향후 일정과 전망

농업협상의 부진은 DDA에서 다른 분야의 협상 일정에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많다.

향후 협상일정에 대해서는 EU가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가 열린 WTO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새로운 진행방식을 제안하였다. EU는 농업협상을 포함한 7개 분야에 대하여 9월의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중간합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TNC에서 결정된 것은 DDA의 타결기한을 당초 결정된 2005년 1월 1일로 확인하였다.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6월의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정치레벨의 타결을 가속화할 것을 표명하였다. 농업모델리티의 결렬이 다른분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이집트 비공식 각료회의, 6월과 7월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등에서 정치적, 기술적 협상을 거쳐 9월의 칸쿤 각료회의에서 전분야 중간합의를 달성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자 주요 일정 ○ 농업모델리티 확립 실패 2003. 3. 31 4. 2-4 ○ WTO 무역협상위원회(TNC)(스위스 제네바) 4. 29-30 ○ OECD 각료의사회(프랑스 빠리) ○ WTO 비공식 각료회의(프랑스 빠리) 4. 30 6. 1-3 ○ 선진국 정상회의(프랑스 에비앙) ○ WTO 비공식 각료회의(이집트) 6. 20-21 6. 26-7. 1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스위스 제네바)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스위스 제네바) 7. 16-18 7월말 ○ 5개국 농업각료회의(호주) 9. 10-14 ○ 제5차 WTO 각료회의(멕시코 칸쿤) ○ DDA 타결(전체협상 일괄타결) 2005. 1. 1

표 4 DDA 협상일정

금년 9월 10일에서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가 현시점에서 농업모델리티 확립의 '2차 시한'으로 간주되고 있다. 만약 여기서 타결되지 않는 경우는 200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3년간의 전체 협상일정에서 추가적으로 2~3년 연장론도 대두되고 있다. 연장하는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무역촉진권한의 연장기한(2007년 6월 1일)까지의 대폭 연장도 예상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4)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4)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18억 601 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6,233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곡물인 쌀을 비롯하여 소맥과 옥수수 등 기타잡곡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5억 1,325만 톤과 생산량을 합 친 23억 1,925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18억 9,32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2/03년도에도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 대비 3.6% 줄어들어 2억 2,95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추정)	2002/03(전망)		변동률(%)	
			2003.3	2003.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39.67	1,868.34	1,810.55	1,806.01	△3.3	△0.3
공 급 량	2,401.88	2,410.06	2,323.89	2,319.25	△3.8	△0.2
소 비 량	1,860.16	1,896.81	1,892.10	1,893.27	△0.2	0.1
교 역 량	232.95	238.15	228.79	229.54	△3.6	0.3
기말재고량	541.72	513.25	431.78	425.98	△17.0	△1.3
기말재고율	29.1	27.1	22.8	22.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7, April 10, 2003.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8,72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2/03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7.0% 감소한 4억 2,598만 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1/02년도 27.1%에서 22.5%로 4.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쌀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쌀 생산량은 2001/02년 보다 4.0% 줄어든 3억 8,106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4억 876만 톤으로 전년 보다 약 161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2,679만 톤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베트남과 미국 등의 주요 수출국의 수출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도의 수출량이 전년 대비 32.5% 감소한 영향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전망된다.

표 2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구 분	2000/01	2001/02	2002/03	3(전망)	변동	변동률(%)	
1 1	2000/01	(추정)	2003.3	2003.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7.96	397.13	382.05	381.06	△4.0	△0.3	
공 급 량	543.60	545.16	516.46	515.84	△5.4	△0.1	
소 비 량	395.56	410.37	408.62	408.76	△0.4	0.0	
교 역 량	24.17	26.96	26.87	26.79	△0.6	△0.3	
기말재고량	148.03	134.78	107.84	107.09	△20.5	△0.7	
기말재고율	37.4	32.8	26.4	26.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7, April 10, 2003.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0.5%가 줄어든 1억 709만 톤 정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쌀 생산국의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기말재고율은 26.2%로 2001/02년도의 32.8%보다 약 6.6%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 소맥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5억 6,428만 톤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2001/02년 5억 8,560만 톤보다 약 993만 톤 증가한 5억 9,553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의 국제 교역량은 2001/02년 1억 801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2/03년 에는 1억 222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18.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국제 소맥 수급 동향

 구 분	2000/01	2001/02	2002/03(전망)		변동	변동률(%)	
1 2	2000/01	(추정)	2003.3	2003.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2.05	580.03	566.93	564.28	△2.7	△0.5	
공 급 량	788.69	784.32	768.27	763.00	△2.7	△0.7	
소 비 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교 역 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기말재고율	34.9	33.9	29.0	28.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7, April 10, 2003.

2002/03년 기말재고량은 1억 6,746만 톤으로 전년보다 15.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고,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33.9%에서 28.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옥수수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억 9,269만 톤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3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6억 2,06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2,791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3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1.4% 감소한 7,467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0%, 17.4%로 이들 두 국가가 약7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구 분	2000/01	2001/02	2002/03	8(전망)	변동	률(%)
l 正	2000/01	(추정)	2003.3	2003.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8.26	598.72	593.95	592.69	△1.0	△0.2
공 급 량	759.30	752.63	726.44	725.28	△3.6	△0.2
소 비 량	605.40	619.04	619.72	620.60	0.3	0.1
교 역 량	77.22	75.75	74.36	74.67	△1.4	0.4
기말재고량	153.91	133.59	106.73	106.68	△20.1	0.0
기말재고율	25.4	21.6	17.2	17.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7, April 10, 2003.

2002/03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0.1% 줄어든 1억 66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2,691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중국,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2/03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4.4% 포인트 줄어든 17.2%가 될 전망이다.

5. 대두의 수급 동향과 전망

2002/03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1억 9,404만 톤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5.6% 늘어난 1억 9,451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47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4.5% 증가한 6,312만 톤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2.9%, 브라질이 32.5%, 아르헨티나가 15.1%의 비중

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0.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3,108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203만 톤과 비교하여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1.4% 포인트 낮은 16.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0/01	2001/02 2002/03(전망)		8(전망)	변동률(%)	
, L	2000/01	(추정)	2003.3	2003.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75.06	184.33	194.00	194.04	5.3	0.0
공 급 량	202.82	214.97	226.03	226.07	5.2	0.0
소 비 량	171.82	184.17	194.54	194.51	5.6	0.0
교 역 량	55.50	55.14	62.67	63.12	14.5	0.7
기말재고량	30.64	32.03	30.99	31.08	△3.0	0.3
기말재고율	17.8	17.4	15.9	16.0		

표 6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귀:	: 백반 돈
구 분	2000/01	2001/02	2002/03	B(전망)	변동	률(%)
让	2000/01	(추정)	2003.3	2003.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43.60	545.16	516.46	515.84	△5.4	△0.1
기초재고량	145.64	148.03	134.41	134.78	△9.0	0.3
생산량	397.96	397.13	382.05	381.06	△4.0	△0.3
미국	5.94	6.74	6.60	6.51	△3.4	△1.4
태국	17.06	17.50	17.20	17.20	△1.7	0.0
베트남	20.47	21.04	21.05	21.05	0.0	0.0
인도네시아	32.96	33.09	33.20	33.20	0.3	0.0
중국	131.54	124.31	121.80	121.80	△2.0	0.0
일본	8.64	8.24	8.08	8.09	△1.8	0.1
수입량	21.80	25.76	25.84	25.60	△0.6	△0.9
인도네시아	1.50	3.50	3.25	3.25	△7.1	0.0
중국	0.27	0.31	0.30	0.30	△3.2	0.0
일본	0.68	0.66	0.70	0.70	6.1	0.0
소비량	395.56	410.37	408.62	408.76	△0.4	0.0
미국	3.68	3.88	3.92	3.88	0.0	△1.0
태국	9.35	9.77	9.92	9.92	1.5	0.0
베트남	17.25	17.40	17.60	17.60	1.1	0.0
인도네시아	35.88	36.36	36.79	36.79	1.2	0.0
중국	134.36	134.58	134.80	134.80	0.2	0.0
일본	9.00	9.00	8.98	8.98	△0.2	0.0
수출량	24.17	26.96	26.87	26.79	△0.6	△0.3
미국	2.59	2.94	3.35	3.36	14.3	0.3
태국	7.52	7.25	7.75	7.50	3.4	△3.2
베트남	3.53	3.25	4.25	4.00	23.1	△5.9
기말재고량	148.03	134.78	107.84	107.09	△20.5	△0.7
미국	0.89	1.22	0.97	0.90	△26.2	△7.2
태국	1.90	2.40	1.93	2.18	△9.2	13.0
인도네시아	4.61	4.84	4.50	4.50	△7.0	0.0
중국	94.10	82.17	67.22	67.22	△18.2	0.0
일본	1.67	1.52	1.12	1.13	△25.7	0.9

표 7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구 분 2000/01 (추정) 2001/02 (추정) 2003.3 2003.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88.69 784.32 768.27 763.00 △2.7 △0.7 기초재고량 206.64 204.29 201.34 198.72 △2.7 △1.3 생산량 582.05 580.03 566.93 564.28 △2.7 △0.5 미국 60.76 53.26 43.99 43.99 △17.4 0.0 호주 22.11 24.85 9.50 9.50 △61.8 0.0 만15 104.73 91.20 103.32 103.32 13.3 0.0 중국 99.64 93.87 91.00 91.00 △3.1 0.0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만15 3.16 9.82 10.50 10.50 6.9 0.0 부수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만로 0.44 0.03 0.05 0.05 66.7 0.0 부수이라 1.60 0.63 0.30 0.30 △52.4 0.0 보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소보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中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만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주출량 102.78 108.01 105.61 △2.9 0.0 부추를 102.78 108.01 102.06 △6.1 △5.8 마키스탄 102.78 108.01 102.06 △6.1 △5.8 마키스타 102.78 108.01 102.06 △6.1 △5.8 마키스타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탈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만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만15 13.38 10.80 11.00 11.00 1.9 0.0 중국 91.88 76.59 61.17 60.97 △20.4 △0.3				İ			백만 돈
공급량 788.69 784.32 768.27 763.00 △2.7 △0.7 기초재고량 206.64 204.29 201.34 198.72 △2.7 △1.3 생산량 582.05 580.03 566.93 564.28 △2.7 △0.5 미국 60.76 53.26 43.99 43.99 △17.4 0.0 호주 22.11 24.85 9.50 9.50 △61.8 0.0 캐나다 26.52 20.57 15.70 15.70 △23.7 0.0 EU15 104.73 91.20 103.32 103.32 13.3 0.0 중국 99.64 93.87 91.00 91.00 △3.1 0.0 라시아 34.45 46.90 50.60 50.55 7.8 △0.1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보라질 7.20 7.01 7.20 7.20 2.7 0.0 복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라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조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라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개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正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발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구 부	2000/01	2001/02	2002/03	3(전망)		- ` ´
기초재고량 206.64 204.29 201.34 198.72 △2.7 △1.3 생산량 582.05 580.03 566.93 564.28 △2.7 △0.5 미국 60.76 53.26 43.99 43.99 △17.4 0.0 호주 22.11 24.85 9.50 9.50 △61.8 0.0 캐나다 26.52 20.57 15.70 15.70 △23.7 0.0 EU15 104.73 91.20 103.32 103.32 13.3 0.0 중국 99.64 93.87 91.00 91.00 △3.1 0.0 러시아 34.45 46.90 50.60 50.55 7.8 △0.1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불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本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本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주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라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11.7 17.32 16.27 8.00 8.00 △50.8 0.00 15.50 8.00 17.50 10.7 17.32 15.23 11.49 15.50 15.50 34.9 0.0 17 17.30 11.00 11.9 0.0		2000,01	(추정)	2003.3	2003.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582.05 580.03 566.93 564.28 △2.7 △0.5 미국 60.76 53.26 43.99 43.99 △17.4 0.0 호주 22.11 24.85 9.50 9.50 △61.8 0.0 캐나다 26.52 20.57 15.70 15.70 △23.7 0.0 EU15 104.73 91.20 103.32 103.32 13.3 0.0 중국 99.64 93.87 91.00 91.00 △3.1 0.0 러시아 34.45 46.90 50.60 50.55 7.8 △0.1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보라질 7.20 7.01 7.20 7.20 2.7 0.0 복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도내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조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단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주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11.7 17.32 16.27 8.00 8.00 △50.8 0.00 50.8 0.00 万.00 万.00 万.00 万.00 万.00 万.00 万	공급량	788.69	784.32	768.27	763.00	△2.7	△0.7
미국 60.76 53.26 43.99 43.99 △17.4 0.0 호주 22.11 24.85 9.50 9.50 △61.8 0.0 개나다 26.52 20.57 15.70 15.70 △23.7 0.0 EU15 104.73 91.20 103.32 103.32 13.3 0.0 중국 99.64 93.87 91.00 91.00 △3.1 0.0 러시아 34.45 46.90 50.60 50.55 7.8 △0.1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보라질 7.20 7.01 7.20 7.20 2.7 0.0 복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조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단비5 13.16 38.08 40.60 40.60 6.6 0.0 주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11.7 17.32 16.27 8.00 8.00 △50.8 0.00 万0.00 71.7 17.7 17.7 17.7 17.7 17.7 17.7	기초재고량	206.64	204.29	201.34	198.72	△2.7	△1.3
호주 22.11 24.85 9.50 9.50 △61.8 0.0 개나다 26.52 20.57 15.70 15.70 △23.7 0.0 EU15 104.73 91.20 103.32 103.32 13.3 0.0 중국 99.64 93.87 91.00 91.00 △3.1 0.0 근사이 34.45 46.90 50.60 50.55 7.8 △0.1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부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근사이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단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구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11.73 11.74 17.32 16.27 8.00 8.00 △50.8 0.00 11.50 0.00 11.50 0.00 11.50 0.00 11.50 0.00 11.70 17.50 0.0 11.70 17.70 0.0	생산량	582.05	580.03	566.93	564.28	△2.7	△0.5
캐나다 26.52 20.57 15.70 15.70 △23.7 0.0 EU15 104.73 91.20 103.32 103.32 13.3 0.0 중국 99.64 93.87 91.00 91.00 △3.1 0.0 러시아 34.45 46.90 50.60 50.55 7.8 △0.1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브라질 7.20 7.01 7.20 7.20 2.7 0.0 복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고리량 591.93 92.11 98.12 98.12 </td <td>미국</td> <td>60.76</td> <td>53.26</td> <td>43.99</td> <td>43.99</td> <td>△17.4</td> <td>0.0</td>	미국	60.76	53.26	43.99	43.99	△17.4	0.0
EU15 104.73 91.20 103.32 103.32 13.3 0.0 중국 99.64 93.87 91.00 91.00 △3.1 0.0 러시아 34.45 46.90 50.60 50.55 7.8 △0.1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보라질 7.20 7.01 7.20 7.20 2.7 0.0 북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보라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로비량 591.93 92.11 98.12 98.12	호주	22.11	24.85	9.50	9.50	△61.8	0.0
중국 99.64 93.87 91.00 91.00 △3.1 0.0 러시아 34.45 46.90 50.60 50.55 7.8 △0.1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블라질 7.20 7.01 7.20 7.20 2.7 0.0 북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카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캐나다	26.52	20.57	15.70	15.70	△23.7	0.0
러시아 34.45 46.90 50.60 50.55 7.8 △0.1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브라질 7.20 7.01 7.20 7.20 2.7 0.0 북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오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카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EU15	104.73	91.20	103.32	103.32	13.3	0.0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브라질 7.20 7.01 7.20 7.20 2.7 0.0 북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주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개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중국	99.64	93.87	91.00	91.00	△3.1	0.0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브라질 7.20 7.01 7.20 7.20 2.7 0.0 북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러시아	34.45	46.90	50.60	50.55	7.8	△0.1
변라질 7.20 7.01 7.20 7.20 2.7 0.0 북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기라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주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패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전기발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수입량	101.53	108.31	104.24	103.73	△4.2	△0.5
북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으로 바람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개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EU15	3.16	9.82	10.50	10.50	6.9	0.0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주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브라질	7.20	7.01	7.20	7.20	2.7	0.0
인도 이.44 이.03 이.05 이.05 66.7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과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주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북아프리카	18.28	17.48	17.20	17.50	0.1	1.7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주출당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파키스탄	0.05	0.24	0.50	0.25	4.2	△5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인도	0.44	0.03	0.05	0.05	66.7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러시아	1.60	0.63	0.30	0.30	△52.4	0.0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소비량	584.81	585.60	595.44	595.53	1.7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미국	36.30	32.72	30.45	31.13	△4.9	2.2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triangle 6.1$ $\triangle 5.8$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triangle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triangle 9.0$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triangle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triangle 15.7$ $\triangle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triangle 42.8$ $\triangle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EU15	91.93	92.11	98.12	98.12	6.5	0.0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중국	110.28	108.74	105.61	105.61	△2.9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파키스탄	20.50	19.80	19.75	18.60	△6.1	△5.8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개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러시아	35.16	38.08	40.60	40.60	6.6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수출량	102.78	108.01	102.06	102.22	△5.4	0.2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미국	28.90	26.16	23.81	23.81	△9.0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캐나다	17.32	16.27	8.00	8.00	△50.8	0.0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EU15	15.23	11.49	15.50	15.50	34.9	0.0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기말재고량	204.29	198.72	172.83	167.46	△15.7	△3.1
	미국	23.85	21.15	12.64	12.10	△42.8	△4.3
중국 91.88 76.59 61.17 60.97 △20.4 △0.3	EU15	13.38	10.80	11.00	11.00	1.9	0.0
	중국	91.88	76.59	61.17	60.97	△20.4	△0.3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		2001/02	2002/03	2 (저 마.)		변동률(%)		
구 분	2000/01	(추정)	2002/03	2003.4		^{절(개)} 전월대비		
 공급량	759.30	752.63	726.44	725.28	신원대미 △3.6			
						△0.2		
기초재고량	171.04	153.91	132.49	132.59	△13.9	0.1		
생산량	588.26	598.72	593.95	592.69	△1.0	△0.2		
미국	251.85	241.49	228.80	228.80	△5.3	0.0		
아르헨티나	15.40	14.40	14.50	15.00	4.2	3.4		
EU15	37.82	39.69	39.44	39.44	△0.6	0.0		
멕시코	17.92	20.40	19.00	17.00	△16.7	△10.5		
동남아시아	15.17	15.07	14.37	14.37	△4.6	0.0		
중국	106.00	114.09	125.00	125.00	9.6	0.0		
수입량	75.62	73.99	74.47	74.34	0.5	△0.2		
EU15	2.86	2.91	2.50	2.50	△14.1	0.0		
일본	16.34	16.40	16.00	16.00	△2.4	0.0		
멕시코	5.93	4.08	6.50	6.50	59.3	0.0		
동남아시아	4.24	3.82	3.76	3.76	△1.6	0.0		
한국	8.74	8.61	9.00	9.00	4.5	0.0		
소비량	605.40	619.04	619.72	620.60	0.3	0.1		
미국	198.10	201.45	199.78	201.56	0.1	0.9		
EU15	40.30	41.60	41.60	41.60	0.0	0.0		
일본	16.20	16.30	16.20	16.20	△0.6	0.0		
멕시코	24.00	23.60	25.50	24.50	3.8	△3.9		
동남아시아	18.85	18.76	18.14	18.14	△3.3	0.0		
한국	8.62	8.74	8.96	8.96	2.5	0.0		
중국	118.00	120.00	122.00	122.00	1.7	0.0		
수출량	77.22	75.75	74.36	74.67	△1.4	0.4		
미국	49.31	47.98	44.45	42.55	△11.3	△4.3		
아르헨티나	9.68	10.80	10.00	10.50	△2.8	5.0		
중국	7.28	8.61	12.00	13.00	51.0	8.3		
기말재고량	153.91	133.59	106.73	106.68	△20.1	0.0		
미국	48.24	40.55	25.51	25.63	△36.8	0.5		
아르헨티나	0.64	0.09	0.21	0.21	133.3	0.0		
EU15	3.74	4.67	4.81	4.81	3.0	0.0		
중국	83.13	68.64	59.75	58.74	△14.4	△1.7		
<u></u> 6 – 1	03.13	00.04	39.13	30.74	△ 14.4	△1./		

표 9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구 분	2000/01	2001/02	2002/03	8(전망)	변동	률(%)				
丁 世	2000/01	(추정)	2003.3	2003.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02.82	214.97	226.03	226.07	5.2	0.0				
기초재고량	27.76	30.64	32.03	32.03	4.5	0.0				
생산량	175.06	184.33	194.00	194.04	5.3	0.0				
미국	75.06	78.67	74.29	74.29	△5.6	0.0				
아르헨티나	27.80	30.00	35.00	35.00	16.7	0.0				
브라질	39.00	43.50	51.00	51.00	17.2	0.0				
중국	15.40	15.41	16.40	16.40	6.4	0.0				
수입량	55.15	56.37	62.17	62.64	11.1	0.8				
EU15	19.34	20.58	20.60	20.60	0.1	0.0				
일본	4.77	5.02	5.05	5.05	0.6	0.0				
중국	13.24	10.38	16.00	16.50	59.0	3.1				
소비량	171.82	184.17	194.54	194.51	5.6	0.0				
미국	49.20	50.90	49.54	48.99	△3.8	△1.1				
아르헨티나	18.40	22.06	25.49	25.49	15.5	0.0				
브라질	24.69	26.91	30.84	30.84	14.6	0.0				
EU15	18.47	19.68	19.74	19.74	0.3	0.0				
일본	5.08	5.21	5.30	5.30	1.7	0.0				
중국	26.70	28.31	32.25	32.75	15.7	1.6				
수출량	55.50	55.14	62.67	63.12	14.5	0.7				
미국	27.10	28.92	26.13	27.08	△6.4	3.6				
아르헨티나	7.42	6.00	9.70	9.50	58.3	△2.1				
브라질	15.47	15.00	20.80	20.50	36.7	△1.4				
기말재고량	30.64	32.03	30.99	31.08	△3.0	0.3				
미국	6.74	5.66	4.34	3.94	△30.4	△9.2				
아르헨티나	7.93	10.16	10.37	10.57	4.0	1.9				
브라질	8.38	11.07	11.33	11.63	5.1	2.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97, April 10, 2003.

(김혜영 hykim@krei.re.kr 02-3299-4269 농산업경제연구센터)

통계 자료

- 표 1 국별 돼지고기 통계(한국)
- 표 2 국별 돼지고기 통계(중국)
- 표 3 국별 돼지고기 통계(일본)
- 표 4 국별 돼지고기 통계(대만)
- 표 5 국별 돼지고기 통계(싱가포르)
- 표 6 국별 돼지고기 통계(필리핀)
- 표 7 국별 돼지고기 통계(카나다)
- 표 8 국별 돼지고기 통계(멕시코)
- 표 9 국별 돼지고기 통계(미국)
- 표 10 국별 돼지고기 통계(브라질)
- 표 11 국별 돼지고기 통계(불가리아)
- 표 12 국별 돼지고기 통계(헝가리)
- 표 13 국별 돼지고기 통계(폴란드)
- 표 14 국별 돼지고기 통계(루마니아)
- 표 15 국별 돼지고기 통계(러시아)
- 표 16 국별 돼지고기 통계(호주)

표 1 국별 돼지고기 통계(한국)

		<u>π</u> 1		시포기 8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58	0	0	58	0.0	100.0	2.3
1961	60	0	0	60	0.0	100.0	2.3
1962	38	0	0	38	0.0	100.0	1.4
1963	55	0	0	55	0.0	100.0	2.0
1964	63	0	0	63	0.0	100.0	2.2
1965	56	0	0	56	0.0	100.0	1.9
1966	96	0	0	96	0.0	100.0	3.3
1967	72	0	0	72	0.0	100.0	2.4
1968	62	0	0	62	0.0	100.0	2.0
1969	76	1	0	75	0.0	101.3	2.4
1970	83	0	0	83	0.0	100.0	2.6
1971	81	0	0	81	0.0	100.0	2.5
1972	93	4	1	89	0.0	104.5	2.7
1973	90	3	1	88	0.0	102.3	2.6
1974	95	4	0	91	0.0	104.4	2.6
1975	98	8	0	89	0.0	110.1	2.5
1976	98	8	0	89	0.0	110.1	2.5
1977	146	5	0	142	0.0	102.8	3.9
1978	172	1	9	177	1.1	97.2	4.8
1979	223	0	11	229	3.1	97.4	6.1
1980	235	0	0	241	0.4	97.5	6.3
1981	209	0	0	210	0.0	99.5	5.4
1982	298	0	0	298	0.0	100.0	7.6
1983	369	0	0	368	0.3	100.3	9.2
1984	424	0	0	425	0.0	99.8	10.5
1985	434	0	0	434	0.0	100.0	10.6
1986	402	1	0	401	0.0	100.2	9.7
1987	470	4	0	466	0.0	100.9	11.2
1988	541	10	0	531	0.0	101.9	12.6
1989	680	15	0	665	0.0	102.3	15.7
1990	634	7	3	630	0.0	100.6	14.7
1991	623	4	25	644	0.0	96.7	14.9
1992	752	11	4	731	1.9	102.9	16.7
1993	773	11	2	767	1.4	100.8	17.4
1994	786	11	26	798	1.8	98.5	17.9
1995	799	18	45	830	1.2	96.3	18.4
1996	865	46	50	872	0.8	99.2	19.2
1997	873	67	77	870	2.3	100.3	18.9
1998	992	116	66	940	2.3	105.5	20.2
1999	950	113	156	984	3.2	96.5	21.0
2000	1,004	30	174	1,059	11.3	94.8	22.4
2001	1,077	41	123	1,159	10.4	92.9	24.2
2002	1,153	14	160	1,206	17.7	95.6	25.0
2003	1,245	25	170	1,250	28.2	99.6	25.7
	1,210		1/0	1,20	20.2	77.0	

표 2 국별 돼지고기 통계(중국)

	산량 수출 천톤) (천		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1960	천톤) (천	토) /え					10000
		년) (1	천톤)	(천톤)	(%)	(%)	(kg)
1961	- -	-	-	-	-	-	-
	- -	-	-	-	-	-	-
1962	- -	-	-	-	-	-	-
1963	- -	-	-	-	-	-	-
1964	- -	-	-	-	-	-	-
1965	- -	-	-	-	-	-	-
1966	- -	-	-	-	-	-	-
1967	- -	-	-	-	-	-	-
1968	- -	-	-	-	-	-	-
1969	- -	-	-	-	-	-	-
1970	- -	-	-	-	-	-	-
1971	- -	-	-	-	-	-	-
1972	- -	-	-	-	-	-	-
1973	- -	-	-	-	-	-	_
1974	- -	-	-	-	-	-	_
1975 7	,094	94	0	7,000	0.0	101.3	7.6
1976 7	,122	94	0	7,028	0.0	101.3	7.5
1977 7	$\langle 137 \mid \epsilon \rangle$	68	0	7,069	0.0	101.0	7.5
)2	0	7,788	0.0	101.3	8.1
		19	0	9,891	0.0	101.2	10.2
		50	0	11,181	0.0	101.4	11.3
1981 11	,884 16	66	0	11,718	0.0	101.4	11.8
1982 12	,718 23	30	0	12,488	0.0	101.8	12.3
1983 13	,161 24	48	0	12,913	0.0	101.9	12.6
1984 14	,447 27	73	0	14,174	0.0	101.9	13.6
1985 16	,547 26	53	0	16,284	0.0	101.6	15.4
1986 17	,960 19	93	0	17,767	0.0	101.1	16.6
		00	0	18,149	0.0	101.1	16.7
		70	0	20,006	0.0	100.8	18.1
)3	0	21,025	0.0	101.0	18.7
		35	0	22,573	0.0	101.0	19.8
		58	0	24,255	0.0	101.1	21.0
		17	0	26,236	0.0	100.4	22.5
		50	0	28,394	0.0	100.5	24.1
P		31	0	31,867	0.0	100.6	26.8
		06	2	36,280	0.0	100.6	30.1
	´	74	2	31,408	0.0	100.5	25.9
			14	35,819	0.0	100.4	29.2
			46	38,740	0.0	100.3	31.3
			43	40,024	0.0	100.1	32.1
			50	40,291	0.0	100.1	32.1
			58	41,764	0.0	100.2	33.0
l l			60	42,835	0.0	100.4	33.6
	,100 20		70	43,970	0.0	100.3	34.3

표 3 국별 돼지고기 통계(일본)

			1 = "		11(22)	1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147	0	8	156	0.0	94.2	1.7
1961	206	0	1	208	0.0	99.0	2.2
1962	324	0	0	324	0.0	100.0	3.4
1963	279	0	9	289	0.0	96.5	3.0
1964	298	0	6	304	0.0	98.0	3.1
1965	407	0	0	407	0.0	100.0	4.1
1966	565	0	0	565	0.0	100.0	5.7
1967	603	0	0	603	0.0	100.0	6.0
1968	590	0	15	604	0.0	97.7	5.9
1969	588	0	61	648	0.0	90.7	6.3
1970	734	0	24	759	0.0	96.7	7.3
1971	843	0	39	882	0.0	95.6	8.3
1972	885	0	97	982	0.0	90.1	9.2
1973	971	0	180	1,150	0.0	84.4	10.6
1974	958	0	60	1,038	1.9	92.3	9.4
1975	1,039	0	178	1,171	5.6	88.7	10.5
1976	1,056	0	204	1,239	7.1	85.2	11.0
1977	1,169	0	152	1,373	2.6	85.1	12.1
1978	1,284	0	148	1,426	2.9	90.0	12.4
1979	1,430	0	188	1,584	4.8	90.3	13.7
1980	1,475	0	155	1,676	1.8	88.0	14.3
1981	1,396	0	262	1,628	3.7	85.7	13.8
1982	1,427	0	202	1,654	2.1	86.3	14.0
1983	1,429	0	238	1,660	2.5	86.1	13.9
1984	1,424	0	279	1,700	2.6	83.8	14.2
1985	1,531	0	272	1,750	5.6	87.5	14.5
1986	1,552	0	297	1,860	4.7	83.4	15.3
1987	1,581	0	401	1,982	4.4	79.8	16.2
1988	1,578	0	461	2,040	4.2	77.4	16.6
1989	1,594	0	491	2,057	5.5	77.5	16.7
1990	1,555	0	488	2,069	4.3	75.2	16.8
1991	1,483	0	590	2,083	3.7	71.2	16.8
1992	1,432	0	684	2,087	5.1	68.6	16.8
1993	1,433	0	653	2,074	5.7	69.1	16.6
1994	1,390	0	728	2,120	5.5	65.6	17.0
1995	1,322	0	869	2,133	8.2	62.0	17.0
1996	1,266	0	1,010	2,196	11.6	57.7	17.5
1997	1,283	0	786	2,134	8.9	60.1	17.0
1998	1,285	0	777	2,146	4.9	59.9	17.0
1999	1,277	0	919	2,212	4.1	57.7	17.5
2000	1,269	0	995	2,228	5.7	57.0	17.6
2001	1,245	1	1,068	2,268	7.5	54.9	17.9
2002	1,228	0	1,162	2,362	8.4	52.0	18.6
2003	1,210	0	1,175	2,420	6.7	50.0	19.0
2003	1,210	U	1,1/3	∠,-T∠∪	0.7	20.0	17.0

표 4 국별 돼지고기 통계(대만)

	1) 1 7L	トラコレ	·		- II (- II I I)	1172	4 A) E) 2 11) 7k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160	0	0	160	0.0	100.0	14.3
1961	181	0	0	181	0.0	100.0	15.7
1962	191	0	0	191	0.0	100.0	16.0
1963	186	0	0	186	0.0	100.0	15.2
1964	199	0	0	199	0.0	100.0	15.8
1965	214	0	0	214	0.0	100.0	16.5
1966	242	0	0	242	0.0	100.0	18.2
1967	280	0	0	280	0.0	100.0	20.5
1968	287	1	0	286	0.0	100.3	20.5
1969	312	6	0	306	0.0	102.0	21.4
1970	320	5	0	315	0.0	101.6	21.6
1971	326	2	0	324	0.0	100.6	21.7
1972	349	13	0	336	0.0	103.9	22.1
1973	426	36	0	390	0.0	109.2	25.1
1974	377	14	0	363	0.0	103.9	22.9
1975	322	11	0	311	0.0	103.5	19.3
1976	425	54	0	371	0.0	114.6	22.6
1977	472	27	0	445	0.0	106.1	26.5
1978	472	26	0	446	0.0	105.8	26.1
1979	566	24	0	542	0.0	104.4	31.1
1980	537	23	0	514	0.0	104.5	28.8
1981	537	29	0	508	0.0	105.7	27.9
1982	525	29	0	496	0.0	105.8	26.8
1983	539	47	0	492	0.0	109.6	26.2
1984	732	73	0	659	0.0	111.1	34.5
1985	831	96	0	735	0.0	113.1	38.0
1986	868	123	0	745	0.0	116.5	38.1
1987	938	194	0	744	0.0	126.1	37.7
1988	911	178	0	733	0.0	124.3	36.7
1989	917	160	0	757	0.0	121.1	37.5
1990	1,009	225	0	784	0.0	128.7	38.7
1991	1,126	324	0	802	0.0	140.4	39.1
1992	1,113	303	0	810	0.0	137.4	39.2
1993	1,135	283	0	852	0.0	133.2	40.8
1994	1,204	331	0	873	0.0	137.9	41.4
1995	1,233	381	5	857	0.0	143.9	40.2
1996	1,269	388	16	897	0.0	141.5	41.7
1997	1,030	70	0	860	11.6	119.8	39.6
1998	892	3	22	971	4.1	91.9	44.3
1999	822	0	86	948	0.0	86.7	42.9
2000	921	0	54	975	0.0	94.5	43.7
2001	962	0	14	976	0.0	98.6	43.3
2002	907	0	25	932	0.0	97.3	41.0
2003	890	0	35	925	0.0	96.2	40.3

표 5 국별 돼지고기 통계(싱가포르)

			국글 케시 -		(371 = =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	-	-	-	-	-	-
1961	-	-	-	-	-	-	-
1962	-	-	-	-	-	-	-
1963	_	-	-	-	_	_	-
1964	_	-	-	-	-	_	-
1965	-	-	-	-	-	-	-
1966	-	-	-	-	-	-	-
1967	-	-	-	-	-	-	-
1968	-	-	-	-	-	-	-
1969	-	-	-	-	-	-	-
1970	-	-	-	-	-	-	-
1971	-	-	-	-	-	-	-
1972	-	-	-	-	_	-	-
1973	-	-	-	-	-	_	-
1974	_	-	-	-	_	_	-
1975	_	-	-	-	_	_	-
1976	_	-	-	-	_	_	-
1977	_	-	-	-	_	_	-
1978	53	0	6	60	1.7	88.3	25.5
1979	61	1	7	68	0.0	89.7	28.5
1980	64	1	8	70	1.4	91.4	29.0
1981	62	1	11	73	0.0	84.9	29.6
1982	58	3	14	69	0.0	84.1	27.3
1983	61	3	19	75	2.7	81.3	29.0
1984	68	5	23	86	2.3	79.1	32.5
1985	72	3	20	89	2.2	80.9	32.9
1986	72	4	17	85	2.4	84.7	30.8
1987	73	5	21	89	2.2	82.0	31.5
1988	76	3	17	90	2.2	84.4	31.1
1989	75	17	32	90	2.2	83.3	30.3
1990	76	5	27	98	2.0	77.6	32.2
1991	81	4	22	99	2.0	81.8	32.0
1992	83	5	29	103	5.8	80.6	32.7
1993	85	5	28	107	6.5	79.4	33.3
1994	87	4	26	108	7.4	80.6	33.0
1995	85	4	25	106	7.5	80.2	31.9
1996	83	3	24	102	9.8	81.4	30.1
1997	84	4	26	108	7.4	77.8	31.4
1998	83		12	98	3.1	84.7	28.1
1999	32	2 2	19	50	4.0	64.0	14.2
2000	19	2	32	49	4.1	38.8	13.7
2001	19	2	37	54	3.7	35.2	15.0
2002	19	2	40	57	3.5	33.3	15.6
2003	19	0	40	61	0.0	31.1	16.6
	13	U	-1 0	01	0.0	J1.1	10.0

표 6 국별 돼지고기 통계(필리핀)

표 6 국멸 돼시고기 동계(필리핀)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199	0	0	199	0.0	100.0	7.0	
1961	206	0	0	206	0.0	100.0	7.0	
1962	234	0	0	234	0.0	100.0	7.7	
1963	244	0	0	244	0.0	100.0	7.8	
1964	258	0	1	259	0.0	99.6	8.0	
1965	290	0	1	291	0.0	99.7	8.7	
1966	317	0	1	318	0.0	99.7	9.3	
1967	338	0	1	339	0.0	99.7	9.6	
1968	360	0	2	362	0.0	99.4	9.9	
1969	383	0	1	384	0.0	99.7	10.2	
1970	369	0	0	369	0.0	100.0	9.5	
1971	374	0	1	375	0.0	99.7	9.4	
1972	318	0	1	319	0.0	99.7	7.8	
1973	358	0	1	352	2.0	101.7	8.4	
1974	372	0	1	373	1.9	99.7	8.6	
1975	323	0	0	318	3.8	101.6	7.2	
1976	325	0	1	330	2.4	98.5	7.2	
1977	289	1	1	293	1.4	98.6	6.2	
1978	318	1	0	317	1.3	100.3	6.6	
1979	377	0	3	373	2.9	101.1	7.5	
1980	412	0	1	410	3.4	100.5	8.0	
1981	455	1	1	455	3.1	100.0	8.7	
1982	392	0	1	400	1.8	98.0	7.4	
1983	452	0	1	450	2.2	100.4	8.2	
1984	440	0	0	439	2.5	100.2	7.8	
1985	430	0	0	435	1.4	98.9	7.5	
1986	478	0	0	477	1.5	100.2	8.1	
1987	490	0	1	496	0.4	98.8	8.2	
1988	540	0	2	540	0.7	100.0	8.7	
1989	615	0	3	610	2.0	100.8	9.6	
1990	665	0	1	670	1.2	99.3	10.3	
1991	690	0	1	695	0.6	99.3	10.4	
1992	710	0	1	710	0.7	100.0	10.4	
1993	690	0	0	687	1.2	100.4	9.9	
1994	715	0	0	715	1.1	100.0	10.0	
1995	754	0	2	760	0.5	99.2	10.4	
1996	860	0	7	866	0.6	99.3	11.6	
1997	901	0	10	907	1.0	99.3	11.9	
1998	933	0	10	942	1.1	99.0	12.1	
1999	973	0	23	997	0.9	97.6	12.6	
2000	1,008	0	22	1,032	0.7	97.7	12.8	
2001	1,064	0	13	1,073	1.0	99.2	13.0	
2002	1,095	0	10	1,105	1.0	99.1	13.1	
2003	1,120	0	10	1,130	1.0	99.1	13.2	

표 7 국별 돼지고기 통계(카나다)

	# 1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541	31	8	534	1.9	101.3	29.2		
1961	534	24	19	528	2.1	101.1	28.3		
1962	539	21	16	537	1.5	100.4	28.3		
1963	537	22	41	553	2.0	97.1	28.6		
1964	580	24	25	580	2.1	100.0	29.4		
1965	551	26	17	544	1.8	101.3	27.1		
1966	556	22	13	544	2.4	102.2	26.6		
1967	654	27	13	639	2.2	102.3	30.7		
1968	644	28	17	636	1.7	101.3	30.1		
1969	615	26	32	621	1.8	99.0	28.9		
1970	746	32	12	725	1.7	102.9	33.3		
1971	813	45	12	779	1.7	104.4	35.4		
1972	787	52	20	759	1.2	103.7	34.1		
1973	763	57	25	725	2.1	105.2	32.1		
1974	767	42	32	762	1.3	100.7	33.3		
1975	655	41	44	660	1.2	99.2	28.4		
1976	643	51	111	699	1.7	92.0	29.7		
1977	648	59	118	709	1.4	91.4	29.8		
1978	741	72	70	737	1.6	100.5	30.7		
1979	889	102	43	830	1.4	107.1	34.2		
1980	1,034	149	22	905	1.5	114.3	36.8		
1981	1,015	164	25	878	1.4	115.6	35.3		
1982	1,006	208	19	820	1.1	122.7	32.5		
1983	1,030	201	24	852	1.2	120.9	33.5		
1984	1,044	224	18	837	1.3	124.7	32.6		
1985	1,088	251	21	860	1.0	126.5	33.1		
1986	1,097	272	18	844	0.9	130.0	32.2		
1987	1,131	301	22	852	0.9	132.7	32.1		
1988	1,188	319	15	879	1.5	135.2	32.7		
1989	1,184	305	12	892	1.3	132.7	32.6		
1990	1,133	314	12	832	1.3	136.2	29.9		
1991	1,096	270	15	838	1.7	130.8	29.8		
1992	1,208	296	16	929	1.4	130.0	32.6		
1993	1,194	303	22	915	1.2	130.5	31.6		
1994	1,229	301	27	951	1.6	129.2	32.5		
1995	1,272	366	31	937	1.6	135.8	31.6		
1996	1,225	384	42	885	1.5	138.4	29.5		
1997	1,257	420	59	889	2.2	141.4	29.3		
1998	1,337	432	64	955	3.6	140.0	31.1		
1999	1,550	554	65	1,063	3.0	145.8	34.3		
2000	1,638	658	68	1,047	3.2	156.4	33.4		
2001	1,729	727	91	1,087	3.6	159.1	34.4		
2002	1,835	839	92	1,087	3.7	168.8	34.0		
2003	1,880	875	100	1,105	3.6	170.1	34.2		
2003	1,000	013	100	1,103	5.0	1/0.1	J-1.4		

표 8 국별 돼지고기 통계(멕시코)

	표 이 국글 레시포기 증계(국시포)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170 166	0	0	170	0.0	100.0	4.4 4.2		
1961 1962	188	0	0	166 188	0.0	100.0 100.0	4.2		
1962	197	0	0	197	0.0	100.0	4.6		
1963	197	0	0	197	0.0	100.0	4.5		
1965	222	0	0	222	0.0	100.0	4.9		
1966	232	0	0	232	0.0	100.0	5.0		
1967	271	0	0	271	0.0	100.0	5.7		
1968	275	0	0	275	0.0	100.0	5.5		
1969	290	0	0	290	0.0	100.0	5.7		
1970	317	0	0	317	0.0	100.0	6.0		
1971	351	0	0	351	0.0	100.0	6.5		
1972	573	0	ő	573	0.0	100.0	10.2		
1973	641	1	11	651	0.0	98.5	11.3		
1974	719	0	12	731	0.0	98.4	12.3		
1975	810	0	1	811	0.0	99.9	13.3		
1976	735	2	2	735	0.0	100.0	11.8		
1977	650	2	5	653	0.0	99.5	10.2		
1978	773	1	9	781	0.0	99.0	11.9		
1979	828	1	11	838	0.0	98.8	12.5		
1980	910	0	11	921	0.0	98.8	13.4		
1981	836	0	16	852	0.0	98.1	12.1		
1982	998	0	11	1,009	0.0	98.9	14.0		
1983	1,136	1	1	1,136	0.0	100.0	15.5		
1984	942	1	1	942	0.0	100.0	12.6		
1985	865	1	1	865	0.0	100.0	11.3		
1986	910	0	1	911	0.0	99.9	11.7		
1987	950	0	0	950	0.0	100.0	11.9		
1988	964	0	16	980	0.0	98.4	12.0		
1989	910	0	27	937	0.0	97.1	11.3		
1990	792	0	17	809	0.0	97.9	9.6		
1991	820	1	40	859	0.0	95.5	9.9		
1992	830	4	55	881	0.0	94.2	10.0		
1993	870	3	50	917	0.0	94.9	10.2		
1994	900	5	100	995	0.0	90.5	10.9		
1995	954	25	54	983	0.0	97.0	10.5		
1996	895	26	59	928	0.0	96.4	9.8		
1997	940	39	82	983	0.0	95.6	10.2		
1998	950	49	144	1,045	0.0	90.9	10.6		
1999	994	53	190	1,131	0.0	87.9	11.3		
2000	1,035	59	276	1,252	0.0	82.7	12.3		
2001	1,065	60	300	1,305	0.0	81.6	12.6		
2002	1,085	60	320	1,345	0.0	80.7	12.8		
2003	1,100	60	320	1,360	0.0	80.9	12.7		

표 9 국별 돼지고기 통계(미국)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연도	(천톤)	ㅜ물ㅎ (천톤)	ㅜㅂㅎ (천톤)	(천톤)	(%)	(%)	
1960	6,307	(전 단) 34	(전 단) 101	(전단) 6,416	1.2	98.3	(kg) 35.5
1961	6,191	33	101	6,246	1.5	99.1	34.0
1962	6,329	30	116	6,401	1.6	98.9	34.3
1963	6,574	64	119	6,607	1.9	99.5	34.9
1964	6,622	63	142	6,698	1.9	98.9	34.9
1965	5,797	25	173	6,005	1.1	96.5	30.9
1966	5,805	26	195	5,937	1.8	97.8	30.2
1967	6,410	26	200	6,560	2.0	97.7	33.0
1968	6,584	42	210	6,766	1.7	97.3	33.7
1969	6,461	70	204	6,615	1.5	97.7	32.6
1970	6,667	31	223	6,803	2.2	98.0	33.2
1971	7,260	33	225	7,454	2.0	97.4	35.9
1972	6,542	48	244	6,791	1.4	96.3	32.4
1973	5,998	78	242	6,129	2.1	97.9	28.9
1974	6,500	47	221	6,665	2.1	97.5	31.2
1975	5,343	96	199	5,472	2.1	97.6	25.3
1976	5,755	143	213	5,842	1.6	98.5	26.8
1977	6,009	133	199	6,087	1.4	98.7	27.6
1978	6,075	130	225	6,105	2.4	99.5	27.4
1979	7,008	132	227	7,087	2.3	98.9	31.5
1980	7,537	114	249	7,641	2.6	98.6	33.5
1981	7,200	139	246	7,358	2.0	97.9	32.0
1982	6,454	97	278	6,661	1.8	96.9	28.7
1983	6,894	99	317	7,067	2.3	97.6	30.2
1984	6,719	74	433	7,084	2.2	94.8	30.0
1985	6,716	58	512	7,197	1.8	93.3	30.2
1986	6,379	39	509	6,865	1.7	92.9	28.5
1987	6,519	49	542	6,964	2.3	93.6	28.7
1988	7,114	88	515	7,506	2.6	94.8	30.6
1989	7,173	119	406	7,516	1.9	95.4	30.4
1990	6,965	108	407	7,272	1.8	95.8	29.1
1991	7,257	128	351	7,438	2.4	97.6	29.4
1992	7,817	185	293	7,926	2.2	98.6	31.0
1993	7,751	202	336	7,897	2.1	98.2	30.6
1994	8,027	249	337	8,079	2.5	99.4	31.0
1995	8,096	357	301	8,059	2.2	100.5	30.6
1996	7,764	440	280	7,618	2.2	101.9	28.7
1997	7,835	474	287	7,629	2.4	102.7	28.5
1998	8,623	558	320	8,305	3.2	103.8	30.7
1999	8,758	580	375	8,596	2.6	101.9	31.5
2000	8,597	584	439	8,457	2.6	101.7	30.8
2001	8,691	708	431	8,388	2.9	103.6	30.3
2002	8,929	732	486	8,684	2.8	102.8	31.1
2003	8,869	746	490	8,610	2.8	103.0	30.6

표 10 국별 돼지고기 통계(브라질)

	ᇪᇫ	스 10 스크라	스이라	소비량	1 1 2 0		1인당소비량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수입량 (천톤)	소미당 (천톤)	재고율	자급률	
1960	(신 년) 368	(천톤) 0	<u>(신문)</u> 0	(신 년) 368	(%) 0.0	100.0	(kg) 5.1
1961	424	0	0	424	0.0	100.0	5.7
1962	476	1	0	475	0.0	100.0	6.2
1962	475	0	0	475	0.0	100.2	6.1
1964	479	0	0	479	0.0	100.0	5.9
1965	484	0	0	483	0.0	100.0	5.8
1966	545	1	0	544	0.0	100.2	6.4
1967	557	0	0	557	0.0	100.2	6.3
1968	598	0	0	598	0.0	100.0	6.6
1969	606	1	0	605	0.0	100.2	6.5
1970	614	2	0	612	0.0	100.3	6.4
1971	587	1	0	586	0.0	100.2	6.0
1972	645	1	0	645	0.0	100.0	6.4
1973	701	3	0	698	0.0	100.4	6.8
1974	723	1	0	722	0.0	100.1	6.8
1975	760	6	0	754	0.0	100.8	6.9
1976	785	12	0	773	0.0	101.6	6.9
1977	834	12	0	822	0.0	101.5	7.2
1978	850	5	0	845	0.0	100.6	7.2
1979	900	0	0	900	0.0	100.0	7.5
1980	850	2	0	848	0.0	100.2	6.9
1981	902	2	0	900	0.0	100.2	7.2
1982	933	3	0	930	0.0	100.3	7.2
1983	950	3	0	947	0.0	100.3	7.2
1984	1,000	3	0	997	0.0	100.3	7.4
1985	1,020	10	0	1,010	0.0	101.0	7.4
1986	1,080	40	70	1,100	0.9	98.2	7.8
1987	1,200	20	0	1,170	1.7	102.6	8.2
1988	1,100	20	0	1,095	0.5	100.5	7.5
1989	1,020	14	60	1,066	0.5	95.7	7.2
1990	1,050	19	2	1,033	0.5	101.6	6.8
1991	1,150	17	2	1,140	0.0	100.9	7.4
1992	1,200	36	1	1,165	0.0	103	7.5
1993	1,250	33	1	1,218	0.0	102.6	7.7
1994	1,300	34	2	1,268	0.0	102.5	7.9
1995	1,450	46	10	1,400	1.0	103.6	8.6
1996	1,600	80	1	1,530	0.3	104.6	9.2
1997	1,540	82	5	1,468	0.0	104.9	8.8
1998	1,690	105	1	1,581	0.3	106.9	9.3
1999	1,835	109	1	1,727	0.3	106.3	10.1
2000	2,010	163	0	1,826	1.4	110.1	10.5
2001	2,230	337	0	1,919	0.0	116.2	10.9
2002	2,565	590	0	1,975	0.0	129.9	11.1
2003	2,615	500	0	2,115	0.0	123.6	11.8

표 11 국별 돼지고기 통계(불가리아)

표 기 국별 돼지고기 중세(물가디아)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109	0	0	109	0.0	100.0	13.8		
1961	123	17	0	106	0.0	116.0	13.3		
1962	120	14	0	106	0.0	113.2	13.2		
1963	101	9	2 2	94	0.0	107.4	11.6		
1964	114	8		108	0.0	105.6	13.3		
1965	152	19	10	143	0.0	106.3	17.4		
1966	146	19	3	131	0.0	111.5	15.9		
1967	142	15	13	140	0.0	101.4	16.9		
1968	158	19	3	142	0.0	111.3	17.0		
1969	136	17	1	120	0.0	113.3	14.2		
1970	119	9	2	113	0.0	105.3	13.3		
1971	138	11	7	134	0.0	103.0	15.7		
1972	165	11	7	161	0.0	102.5	18.8		
1973	223	9	12	226	0.0	98.7	26.2		
1974	212	13	26	225	0.0	94.2	25.9		
1975	329	13	0	316	0.0	104.1	36.2		
1976	370	21	0	349	0.0	106.0	39.9		
1977	321	15	0	306	0.0	104.9	34.8		
1978	321	16	0	305	0.0	105.2	34.6		
1979	359	18	0	341	0.0	105.3	38.7		
1980	372	11	0	361	0.0	103.0	40.8		
1981	380	7	0	373	0.0	101.9	42.0		
1982	378	10	0	368	0.0	102.7	41.4		
1983	394	10	0	384	0.0	102.6	43.1		
1984	391	10	0	381	0.0	102.6	42.7		
1985	390	10	0	380	0.0	102.6	42.5		
1986	434	10	0	414	2.4	104.8	46.2		
1987	416	4	0	412	2.4	101.0	45.9		
1988	404	5	0	399	2.5	101.3	44.4		
1989	413	5	0	408	2.5	101.2	45.4		
1990	408	5	0	403	2.5	101.2	45.0		
1991	362	5	0	357	2.8	101.4	40.0		
1992	312	6	0	312	1.3	100.0	35.2		
1993	265	1	4	268	1.5	98.9	31.6		
1994	267	1 1	8	274	1.5	97.4	32.4		
1995	265		1	265	1.5	100.0	31.6		
1996	270 225	10	0	231	14.3	116.9	27.7		
1997	_	7	3 6	246	3.3	91.5	29.7		
1998 1999	235 267	0 3	4	248 249	0.4 8.0	94.8	30.1 30.4		
		0	1			107.2			
2000	224 121	0	11 22	235	8.5	95.3 82.3	28.8		
2001			12	147	10.9	l .	18.1		
2002	180	0		195	6.7	92.3	24.1		
2003	150	0	20	174	5.2	86.2	21.6		

표 12 국별 돼지고기 통계(헝가리)

					11(871-1)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249	0	0	249	0.0	100.0	24.9
1961	275	12	11	274	0.0	100.4	27.3
1962	283	22	7	268	0.0	105.6	26.6
1963	281	18	12	275	0.0	102.2	27.2
1964	287	21	18	284	0.0	101.1	28.1
1965	307	33	21	295	0.0	104.1	29.1
1966	297	31	18	284	0.0	104.6	27.9
1967	293	31	42	304	0.0	96.4	29.7
1968	339	30	15	324	0.0	104.6	31.6
1969	301	18	20	303	0.0	99.3	29.4
1970	310	19	43	334	0.0	92.8	32.3
1971	376	47	4	333	0.0	112.9	32.1
1972	426	51	3	378	0.0	112.7	36.4
1973	725	17	13	721	0.0	100.6	69.2
1974	842	66	16	792	0.0	106.3	75.6
1975	875	53	2	824	0.0	106.2	78.2
1976	795	33	9	771	0.0	103.1	72.8
1977	899	39	0	860	0.0	104.5	80.8
1978	887	50	0	837	0.0	106.0	78.4
1979	917	77	0	840	0.0	109.2	78.5
1980	939	92	2	849	0.0	110.6	79.3
1981	941	95	0	846	0.0	111.2	79.0
1982	981	118	1	864	0.0	113.5	80.7
1983	1,094	125	0	966	0.3	113.3	90.4
1984	1,168	220	0	947	0.4	123.3	88.8
1985	1,060	150	0	909	0.6	116.6	85.4
1986	962	133	0	829	0.6	116.0	78.0
1987	1,064	123	0	938	0.9	113.4	88.4
1988	986	133	0	851	1.2	115.9	81.5
1989	1,079	135	0	937	1.8	115.2	90.1
1990	970	190	0	734	5.9	132.2	70.9
1991	932	110	0	751	10.7	124.1	72.5
1992	570	69	6	537	9.3	106.1	51.9
1993	500	30	21	509	6.3	98.2	49.3
1994	494	48	52	477	11.1	103.6	46.3
1995	410	83	39	403	4.0	101.7	39.2
1996	490	145	13	355	5.4	138.0	34.6
1997	485	136	22	371	5.1	130.7	36.3
1998	408	109	39	345	3.5	118.3	33.8
1999	500	131	19	385	3.9	129.9	37.8
2000	490	143	35	372	6.7	131.7	36.6
2001	460	118	39	381	6.6	120.7	37.5
2002	470	120	40	390	6.4	120.5	38.5
2003	465	110	35	400	3.8	116.2	39.5

표 13 국별 돼지고기 통계(폴란드)

	יון און און	2 70	\ \ \ \ \ \ \ \ \ \ \ \ \ \ \ \ \ \ \			7) -1 -1	المراجا عاما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793	0	0	793	0.0	100.0	26.8
1961	867	155	4	716	0.0	121.1	23.9
1962	856	154	1	703	0.0	121.8	23.2
1963	768	141	30	656	0.0	117.1	21.4
1964	754	139	24	639	0.0	118.0	20.6
1965	896	182	33	748	0.0	119.8	23.9
1966	928	148	27	807	0.0	115.0	25.6
1967	906	157	33	782	0.0	115.9	24.6
1968	888	151	73	810	0.0	109.6	25.3
1969	904	141	32	796	0.0	113.6	24.7
1970	884	136	38	786	0.0	112.5	24.2
1971	907	147	148	909	0.0	99.8	27.7
1972	1,099	148	48	999	0.0	110.0	30.2
1973	1,833	160	39	1,712	0.0	107.1	51.4
1974	1,948	91	4	1,861	0.0	104.7	55.3
1975	1,852	81	14	1,785	0.0	103.8	52.5
1976	1,592	89	18	1,521	0.0	104.7	44.3
1977	1,599	83	22	1,534	0.3	104.2	44.3
1978	1,843	89	19	1,770	0.5	104.1	50.7
1979	1,855	110	0	1,744	0.5	106.4	49.5
1980	1,987	98	11	1,904	0.3	104.4	53.5
1981	1,392	48	84	1,415	1.3	98.4	39.4
1982	1,542	40	58	1,557	1.3	99.0	43.0
1983	1,444	79	29	1,396	1.4	103.4	38.2
1984	1,288	58	92	1,323	1.4	97.4	35.9
1985	1,503	67	26	1,327	11.5	113.3	35.7
1986	1,749	73	12	1,676	9.8	104.4	44.8
1987	1,745	75	14	1,724	7.3	101.2	45.8
1988	1,845	76	6	1,776	7.0	103.9	47.0
1989	1,870	73	20	1,874	3.6	99.8	49.4
1990	1,870	50	36	1,881	2.2	99.4	49.4
1991	1,966	21	60	2,007	2.0	98.0	52.5
1992	2,052	14	35	2,073	1.9	99.0	54.0
1993	1,537	11	49	1,585	1.9	97.0	41.2
1994	1,358	27	127	1,458	2.1	93.1	37.8
1995	1,580	105	61	1,480	5.8	106.8	38.4
1996	1,684	187	50	1,576	3.6	106.9	40.8
1997	1,540	284	41	1,334	1.5	115.4	34.5
1998	1,650	220	74	1,462	4.2	112.9	37.9
1999	1,675	235	55	1,484	4.9	112.9	38.4
2000	1,620	160	47	1,544	2.3	104.9	40.0
2001	1,550	88	19	1,487	2.0	104.2	38.4
2002	1,640	80	40	1,580	3.2	103.8	40.7
2003	1,720	80	20	1,680	1.8	102.4	43.1

표 14 국별 돼지고기 통계(루마니아)

					1(1 1 1-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	-	-	-	-	-	-
1961	-	-	-	-	-	-	-
1962	-	-	-	-	-	-	-
1963	-	-	-	-	-	-	-
1964	-	-	-	-	-	-	-
1965	-	-	-	-	-	_	-
1966	-	-	-	-	-	-	-
1967	-	-	-	-	-	_	-
1968	-	-	-	-	-	-	-
1969	455	0	0	455	0.0	100.0	22.7
1970	468	0	0	468	0.0	100.0	23.1
1971	493	0	0	493	0.0	100.0	24.1
1972	615	0	0	615	0.0	100.0	29.8
1973	701	0	0	701	0.0	100.0	33.7
1974	779	0	0	779	0.0	100.0	37.0
1975	754	82	0	672	0.0	112.2	31.6
1976	754	65	0	689	0.0	109.4	32.1
1977	829	63	0	766	0.0	108.2	35.4
1978	850	31	0	819	0.0	103.8	37.5
1979	925	63	0	862	0.0	107.3	39.2
1980	894	60	0	834	0.0	107.2	37.7
1981	923	90	0	833	0.0	110.8	37.5
1982	816	50	0	751	2.0	108.7	33.6
1983	821	85	5	741	2.0	110.8	33.1
1984	715	75	5	645	2.3	110.9	28.8
1985	875	125	0	745	2.7	117.4	33.2
1986	840	135	0	700	3.6	120.0	31.1
1987	900	150	0	750	3.3	120.0	33.2
1988	840	140	0	710	2.1	118.3	31.3
1989	600	180	0	410	6.1	146.3	18.0
1990	620	0	70	685	4.4	90.5	30.1
1991	650	26	10	639	3.9	101.7	28.1
1992	491	33	0	459	5.2	107.0	20.2
1993	373	55	1	318	7.9	117.3	14.0
1994	565	50	0	500	8.0	113.0	22.1
1995	421	37	12	406	7.4	103.7	18.0
1996	425	35	4	399	6.3	106.5	17.7
1997	400	55	5	350	7.1	114.3	15.6
1998	350	6	53	392	7.7	89.3	17.5
1999	375	5	27	392	8.9	95.7	17.6
2000	360	1	29	408	3.7	88.2	18.3
2001	406	0	46	452	3.3	89.8	20.3
2002	405	0	55	460	3.3	88.0	20.7
2003	410	1	55	464	3.2	88.4	20.8

표 15 국별 돼지고기 통계(러시아)

-	יון און און	入ラゴ	. 시 기) 11] =]L	-1) O	-) - =	4 A) E) 2 11) Th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	-	-	-	-	-	-
1961	-	-	-	-	-	-	-
1962	-	-	-	-	-	-	-
1963	-	-	-	-	-	-	-
1964	-	-	-	-	-	-	-
1965	-	-	-	-	-	-	-
1966	-	-	-	-	-	-	-
1967	-	-	-	-	-	-	-
1968	-	-	-	-	-	-	-
1969	-	-	-	-	-	-	-
1970	-	-	-	-	-	-	-
1971	-	-	-	-	-	-	-
1972	-	-	-	-	-	-	-
1973	-	-	-	-	-	-	-
1974	-	-	-	-	-	-	-
1975	-	-	-	-	-	-	-
1976	-	-	-	-	-	-	-
1977	-	-	-	-	-	-	-
1978	-	-	-	-	-	-	-
1979	-	-	-	-	-	-	-
1980	-	-	-	-	-	-	-
1981	-	-	-	-	-	-	-
1982	-	-	-	-	-	_	-
1983	-	-	-	-	-	_	-
1984	-	-	-	-	-	-	-
1985	-	-	-	-	-	_	-
1986	-	-	-	-	-	_	-
1987	-	-	-	-	-	-	-
1988	3,399	0	249	3,648	0.0	93.2	24.8
1989	3,499	0	376	3,875	0.0	90.3	26.3
1990	3,480	0	440	3,502	11.9	99.4	23.6
1991	3,190	0	262	3,487	11.0	91.5	23.5
1992	2,784	0	141	2,974	11.2	93.6	20.0
1993	2,432	0	220	2,694	10.8	90.3	18.1
1994	2,103	1	324	2,466	10.2	85.3	16.6
1995	1,865	1	550	2,666	0.0	70.0	18.0
1996	1,700	1	690	2,389	0.0	71.2	16.2
1997	1,570	1	880	2,449	0.0	64.1	16.6
1998	1,510	1	710	2,219	0.0	68.0	15.1
1999	1,490	1	832	2,321	0.0	64.2	15.8
2000	1,500	1	520	2,019	0.0	74.3	13.8
2001	1,560	1	560	2,119	0.0	73.6	14.6
2002	1,630	1	800	2,429	0.0	67.1	16.8
2003	1,750	1	630	2,379	0.0	73.6	16.4

표 16 국별 돼지고기 통계(호주)

	표 10 국일 세시고기 중세(오구)								
<u></u> 연도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재고율	자급률	1인당소비량		
언도	(천톤)	(천톤)	(천톤)	(천톤)	(%)	(%)	(kg)		
1960	107	0	0	107	0.9	100.0	10.3		
1961	114	2	0	111	1.8	102.7	10.5		
1962	122	2	0	121	0.8	100.8	11.2		
1963	111	1	0	110	0.9	100.9	10.0		
1964	118	1	0	117	1.7	100.9	10.4		
1965	130	2	0	128	1.6	101.6	11.2		
1966	139	2	0	138	0.7	100.7	11.8		
1967	145	2 2	0	143	0.7	101.4	12.0		
1968	156	2	0	154	0.6	101.3	12.7		
1969	170	6	0	163	1.2	104.3	13.2		
1970	177	5	0	173	0.6	102.3	13.7		
1971	185	5	0	179	1.1	103.4	13.8		
1972	213	17	0	195	1.5	109.2	14.8		
1973	238	22	0	217	0.9	109.7	16.2		
1974	186	5	0	181	1.1	102.8	13.3		
1975	172	7	0	165	1.2	104.2	12.0		
1976	179	8	0	171	1.2	104.7	12.3		
1977	192	5	0	186	1.6	103.2	13.2		
1978	199	5	0	195	1.0	102.1	13.7		
1979	206	6	0	198	2.0	104.0	13.7		
1980	232	5	0	228	1.3	101.8	15.6		
1981	231	4	0	228	0.9	101.3	15.3		
1982	230	3	0	226	1.3	101.8	14.9		
1983	247	5 2 2	0	243	0.8	101.6	15.8		
1984	256	2	0	254	0.8	100.8	16.3		
1985	263	2	0	261	0.8	100.8	16.5		
1986	270	3	0	269	0.0	100.4	16.8		
1987	283	7	0	276	0.0	102.5	17.0		
1988	298	10	0	288	0.0	103.5	17.4		
1989	302	7	0	295	0.0	102.4	17.6		
1990	319	7	0	312	0.0	102.2	18.3		
1991	312	5	2 3 2 3 6	309	0.0	101.0	17.9		
1992	336	6	3	333	0.0	100.9	19.0		
1993	328	8	2	322	0.0	101.9	18.2		
1994	344	7	3	340	0.0	101.2	19.0		
1995	351	6	6	351	0.0	100.0	19.4		
1996	330	8	8	330	0.0	100.0	18.1		
1997	339	12	12	339	0.0	100.0	18.4		
1998	369	17	10	362	0.0	101.9	19.4		
1999	362	37	28	353	0.0	102.5	18.8		
2000	365	49	45	350	3.1	104.3	18.5		
2001	379	66	38	361	0.3	105.0	18.9		
2002	411	78	60	383	2.9	107.3	19.9		
2003	390	80	60	370	3.0	105.4	19.0		

자료 : http://www.worldfood.muses.tottori-u.ac.jp에서 (김혜영 hykim@krei.re.kr 02-3299-4366 농산업경제연구센터)

M45-32 세계농업뉴스 제32호 (2003. 4)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3년 4월

발 행 2003년 4월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